

대전지역 건설노동자 실태조사

제1장. 조사 목적과 방법

1. 실태조사의 목적

○ 대전지역 건설현장노동자¹⁾의 임금 및 노동조건, 생활실태 등을 파악함.

- 건설현장노동자는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자(irregular worker)로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지위로 인하여 커다란 생활불안을 겪고 있음. 하지만 건설현장노동자(이하에서는 ‘건설노동자’로 함)의 노동조건 및 고용양상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- 우선 건설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전국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 건설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건설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에 대한 보호방안이 적절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음.

- 여기에서는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, 건설노동자 보호방안 및 건설노동자 사회복지대책(실업대책 및 노동시장정책 등)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인 실태파악에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.

1) 건설노동자는 크게 건설산업의 사무직노동자와 생산직노동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, 여기서는 이들을 각각 ‘건설사무노동자’와 ‘건설현장노동자’로 지칭함. 이 보고서의 조사 대상은 건설현장노동자들임.

2. 조사개요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, 노동조건과 생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.

- 대전광역시와 대전건설노동조합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함.

○ 조사기간: 2000년 11월 1일~12월 30일

- 조사인원은 조합간부 1명, 현장감시단 12명, 조사원(대전시 지원인원) 6명, 행정실무 1명으로 구성됨.

- 조사원 운영은 2인 1조를 기본으로 하여 감시단 3조가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. 건설현장에서의 조사작업은 조사원과 감시단이 함께 수행하였고, 거주지(주택방문조사) 조사는 조사원이 하였음.

- 조사책임은 노조간부 1명이 담당하였고, 설문지 수거와 정리, 회의 주재, 현장 안전교육시간에 설문조사에 대한 설명 등의 역할을 했음. 행정실무 1명은 감시단 1명으로 구직자 명단확인, 매일 나갈 현장 및 거주지 확인 등 일정관리, 설문지 수거와 정리를 담당함.

- 조사방법은 건설현장, 거주지 모두 설문지 면접조사방식을 진행하였음.

○ 설문지 수거현황

- 원래 설문조사 목표는 1,000부로 설정하였으나 거주지 조사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탓에 전체 985부의 설문지가 수거됨.

- 설문지 수거현황은 <표 2-1>과 같음. 관급공사현장이 580부(58.9%), 민간공사현장이 151부(15.3%), 거주지 216부(21.9%), 사무실방문자가 38부(3.9%)

임. 상대적으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관급공사현장의 비중이 높은 편임.

<표 1-1> 설문지 수거현황

구분	설문지 수	
관급공사	예술의 전당	66
	택지개발	101
	월드컵경기장	23
	지하철 1-1공구	31
	지하철 1-2공구	69
	지하철 1-3공구	58
	지하철 1-6공구	37
	지하철 1-7공구	5
	지하철 1-8공구	70
	지하철 1-9공구	66
	지하철 1-10공구	35
	지하철 1-11공구	19
	합계	580
민간공사	상가 및 주택	91
	삼성아파트	51
	충북전의현장	9
	합계	151
거주지	216	
사무실 방문	38	
전체	985	

○ 설문조사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함.

- 빈도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교차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.

제2장. 실태조사 결과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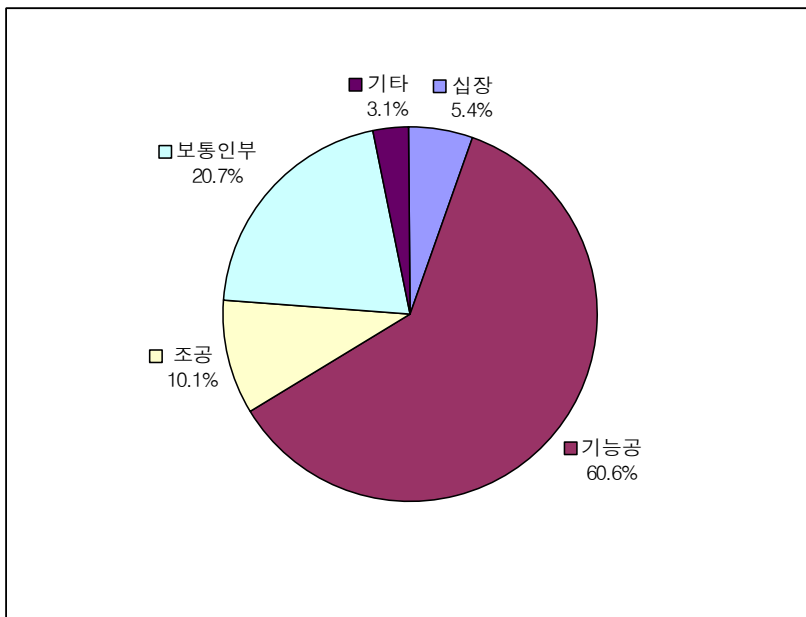
1. 조사대상자의 특성

○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,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건설노동자의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.

-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미리 살펴봄으로써,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여기에서는 건설노동자의 직위, 직종, 경력, 연령, 학력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도록 함.

<그림 2-1> 건설노동자의 직위별 구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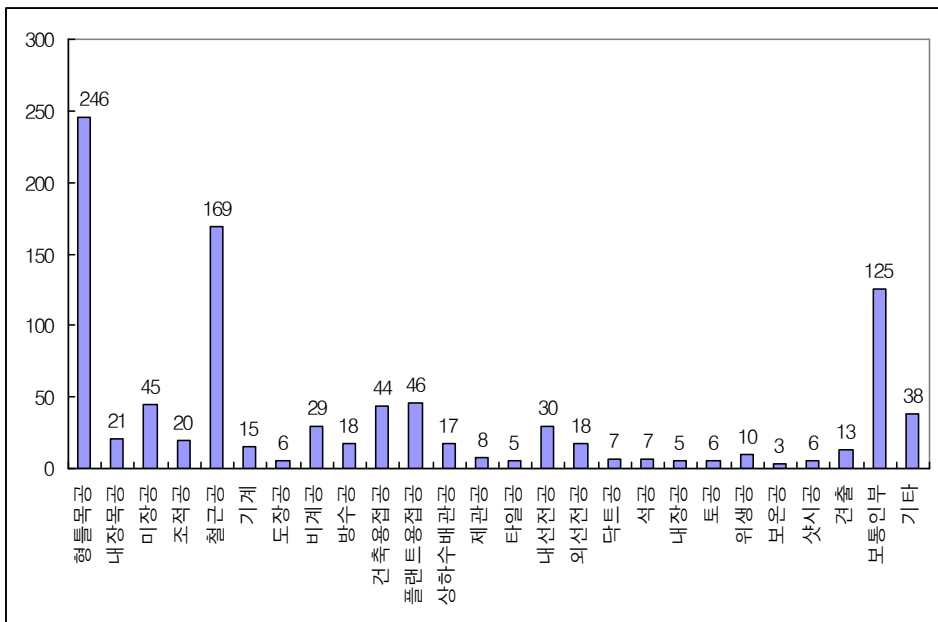
○ 건설노동자의 직위는 크게 십장(오야지), 기능공, 조공, 보통인부(잡부)로 나뉘어 지는 데, 이번 조사에서 각각의 비중은 <그림 2-1>에서 보는 바와 같음.

- 전체 조사대상자 중 십장이 5.4%(52명), 기능공이 60.8%(582명), 조공이 10.1%(97명), 보통인부가 20.7%(199명)를 차지하고 있음. 즉 기능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○ 대전 건설노동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, 형틀목공 25.7%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이 철근공(17.7%)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다른 직종들은 3명~46명 등 비교적 작은 비중을 차지하면서, 다양한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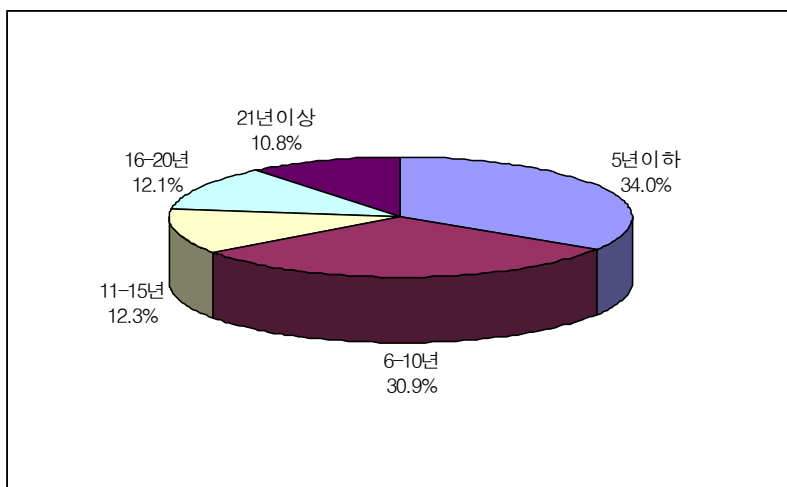
<그림 2-2> 건설노동자의 직종별 분포



○ 노동자의 경력은 평균 10.6년으로 나타났고, 5년 이하의 건설노동자가 34.0%(327명)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16년 이상된 노동자도 22.9%(220명)나 됨.

- 10년 이하의 노동자 비중이 64.9%로 나타나 IMF 경제위기 이후 젊은 노동자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2-3> 건설노동자의 경력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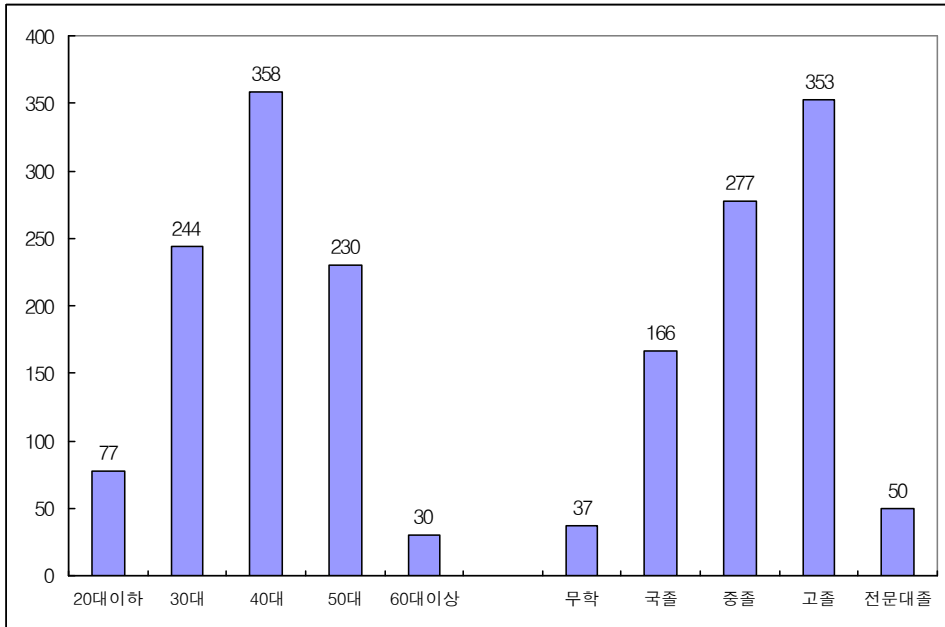


○ 노동자의 연령과 학력은 <그림 2-4>와 같음.

- 연령은 30대(26.0%), 40대(38.1%), 50대(23.4%)에 집중되어 있음. 20대 이하는 8.2%에 불과하며 60대 이상은 3.0%임. 평균연령은 43.1세임.

- 학력에서는 고졸(38.5%)과 중졸(30.2%)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다음으로는 국졸, 전문대졸, 무학, 대졸이상의 순임.

<그림 2-4> 건설노동자의 연령과 학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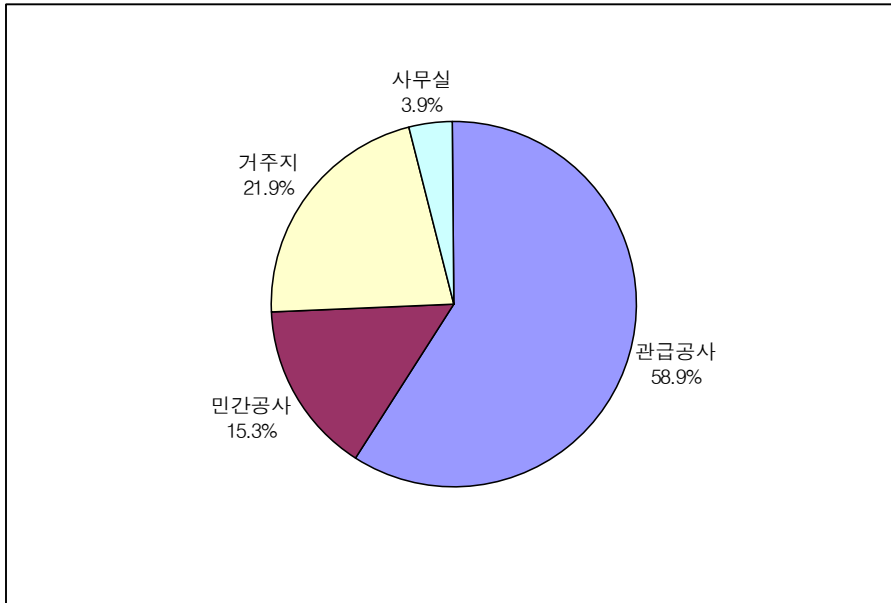
2. 임금 및 노동조건

1) 근로계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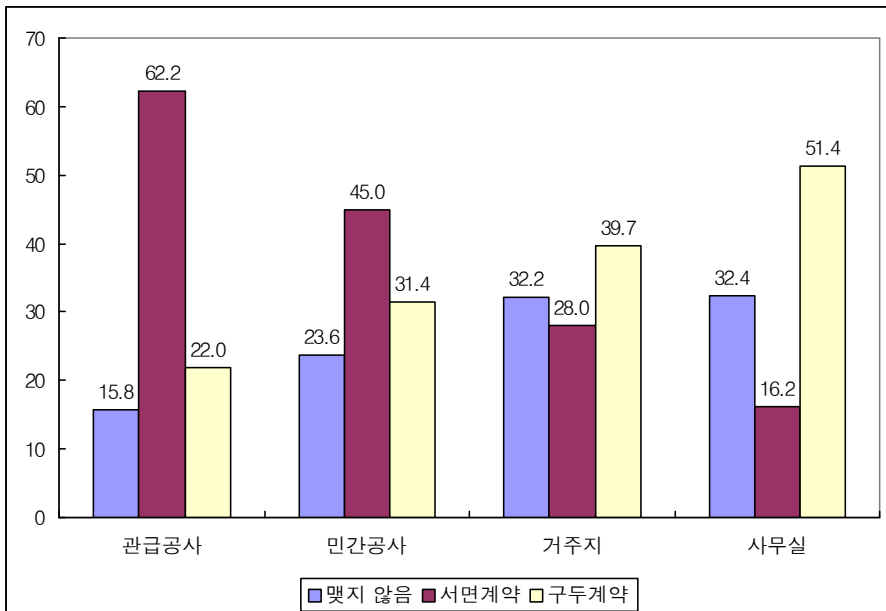
○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사간에 처음에 결정하게 되는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는 서면계약이 50.2%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. 구두계약은 28.6%이고, 맺지 않은 경우는 21.3%에 불과하였음. 서면계약이 50.2%로 나타난 것은 매우 높은 것으로, 이번 조사에서 관급공사현장의 비중이(58.9%) 높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(<그림 2-5> 참고).

- 한편 민간공사현장의 경우는 서면계약의 비중이 45.0%, 거주지의 경우는 28.0%, 사무실은 16.2%로 나타났음(<그림 2-6> 참고). 이런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서면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.

<그림 2-5> 공사현장별 노동자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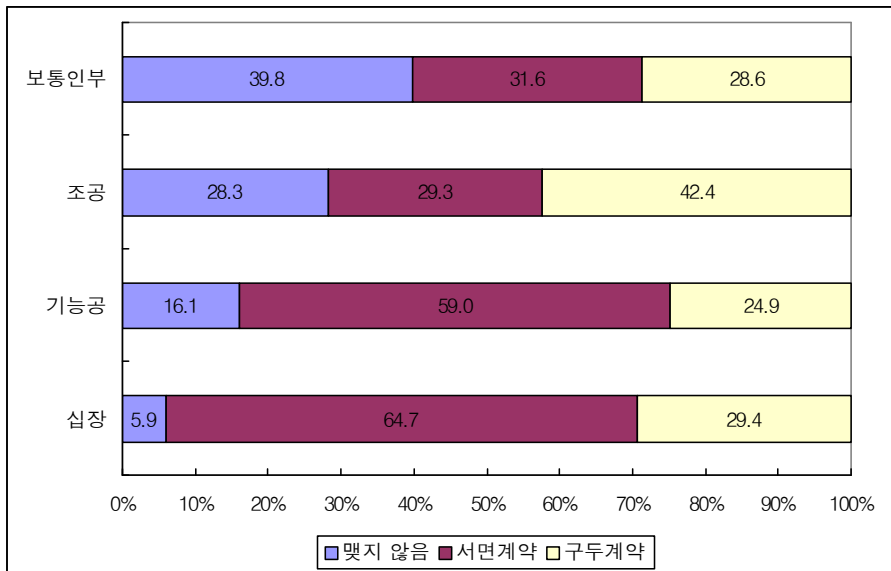


<그림 2-6> 공사현장별 근로계약 형태



- 직위별로 근로계약형태를 보면,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장과 기능공은 서면계약의 비중이 64.7%와 59.0%로 비교적 높았고, 비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공과 보통인부의 경우는 각각 29.3%와 31.6%를 차지하였음(<그림 2-7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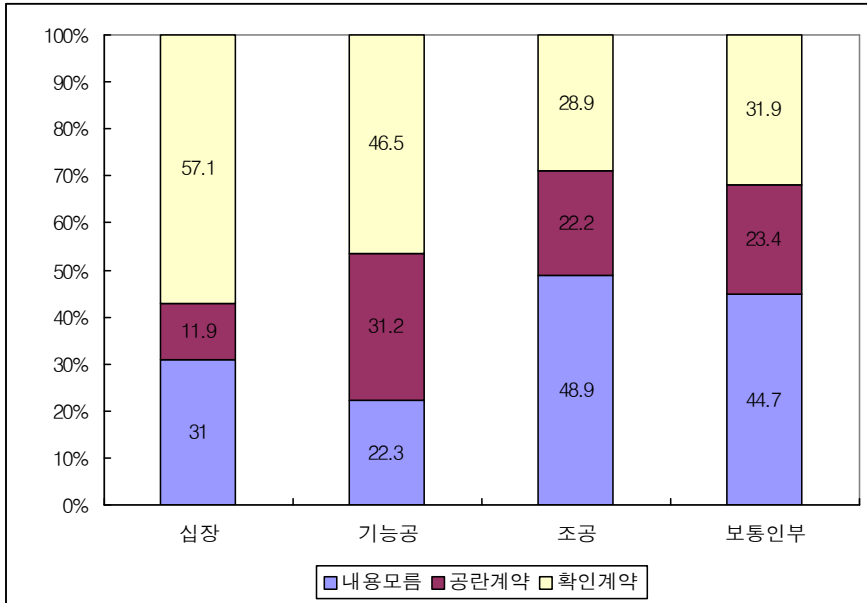
<그림 2-7> 직위별 근로계약형태 비중



○ 한편,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맺은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둔 채 맺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중이 56.1%로 나타나 건설노동자의 근로계약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.

- <그림 2-8>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, ‘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모두 확인하고 맺었다’고 응답한 비중은 조공과 보통인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각 28.9%와 31.9%였음.

<그림 2-8> 직위별 서면계약 내용의 비중



○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취업규칙이나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와 장시간근로 및 근로계약 해제 시점 명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음(<표 2-1>참고).

<표 2-1> 근로계약 체결 과정의 기본사항 준수정도

구분	‘아니오’라고 응답한 비중
1) 8시간이상의 장시간 근로 등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강요당했다	615(77.8%)
2)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현장에 비치했다	529(68.3%)
3)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 유무에 대해 알려주었다	614(78.1%)
4) 근로계약 체결일은 있으나 공사만료시점(계약해제)이 없다	410(53.3%)
5)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알려준다	549(71.5%)

- 이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‘취업규칙’, ‘퇴직공제제도’, ‘고용보험’ 문제였음. ‘취업규칙을 보여주며 현장에 비치했다’에 아니라고 응답한 비중은 68.3%였고, ‘퇴직공제제도의 가입 유무에 대해 알려주었다’에 아니라고 응답한 비중은 78.1%, ‘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알려준다’에 아니라고 응답한 비중은 71.5%로 모두 70%대를 기록하였음.

- 또 건설노동자의 커다란 고용불안 문제인 근로계약 해제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53.3%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약 절반 정도의 경우에 계약해제일이 명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.

- 한편 ‘장시간근로 등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강요당했다’라는 문항에는 77.8%가 아니라고 응답하였음.

2) 구직방식 및 구직활성화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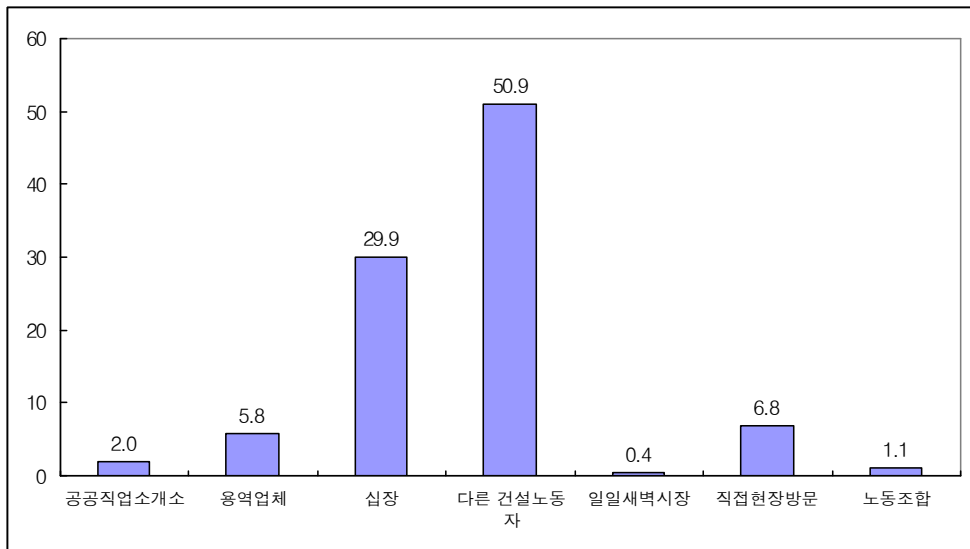
○ 건설노동자는 현장공사기간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작업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구직 및 구인방식의 합리화가 중요함.

○ 현재 건설노동자의 구직방식은 ‘다른 건설노동자(혹은 친구)를 통해서’가 50%를 넘어설 정도로, 공공직업소개소 등 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상태임(<그림 2-9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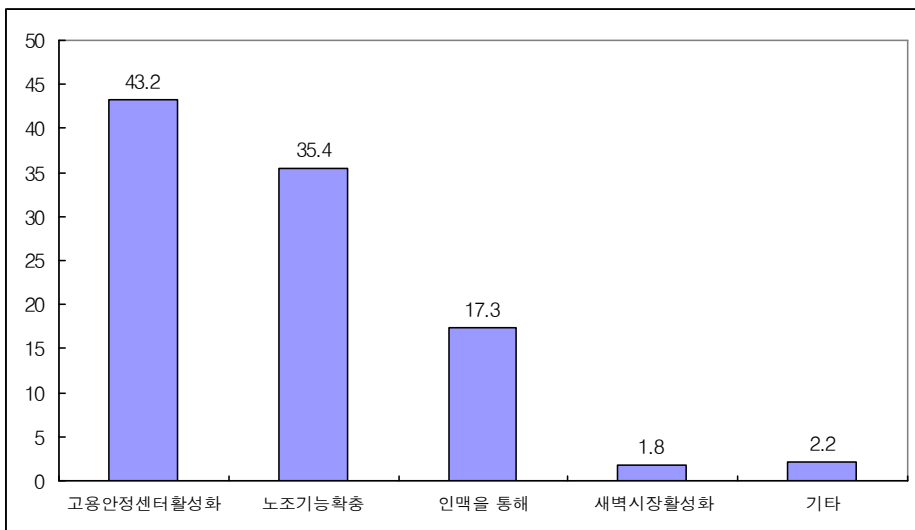
- 공공직업소개소를 통해서는 2.0%에 불과하고, 용역업체를 통하는 경우도 5.8%에 불과함.

- 반면 ‘십장을 통해서’와 ‘다른 건설노동자’를 통해서가 각각 29.9%와 50.9%를 차지해서 80.8%에 달함.

<그림 2-9> 건설노동자 구직경로



<그림 2-10> 건설노동자 구직활성화 방안



○ 구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위와는 전혀 다른 응답이 나타남(<그림 2-10> 참고).

- 실제 구직경로에서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던 ‘노동부 고용안정센터 활성화’(43.2%)와 ‘노조기능의 활성화’(35.4%)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함. 양자를 합치면 78.6%나 됨.

-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인맥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, 건설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좀더 안정적이고 적합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구직체계가 확립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.

○ 한편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임금중간착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용역업체를 인정하되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(<표 2-2> 참고).

<표 2-2>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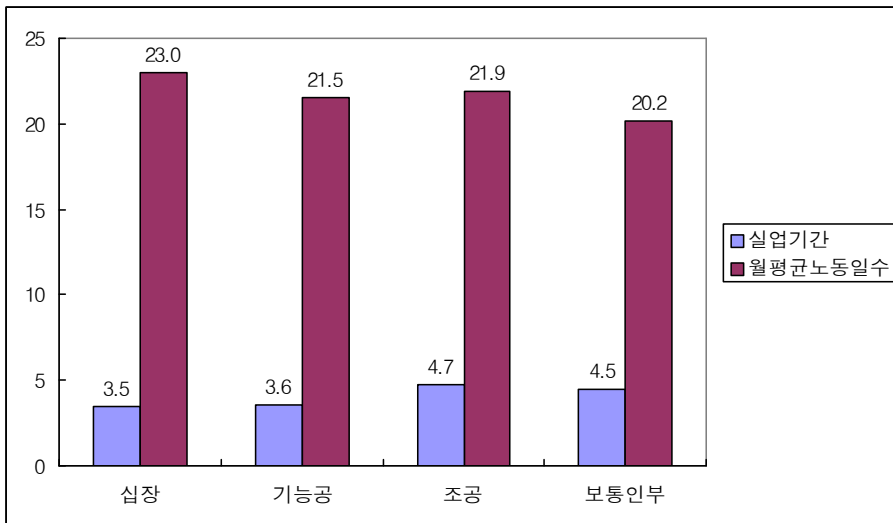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비중
용역업체의 임금중간착취(수수료, 소개료 등)가 너무 심하므로 없어져야 한다	201(22.5%)
현재 용역업체가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잘 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	29(3.2%)
용역을 양성화하되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	267(29.9%)
용역을 통해 일을 구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	381(42.6%)
기타	16(1.8%)

- ‘용역을 통해 일을 구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’는 응답도 42.6%나 있음.

- 결국 용역업체의 경험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의견이 크게 양분되는 것을 볼 수 있음. 즉 용역업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으로 나뉨.

○ 건설현장은 1년 중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이 있게 마련이어서, 다른 업종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실업하게 되는 기간이 있음. 이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년간 실업기간과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노동일수를 알아보았음.

<그림 2-11> 1년간 실업기간과 최근 3개월간 월평균노동일수
(단위: 개월, 일)



- 1년간 실업기간은 전체 평균은 3.9개월이었는데, 십장과 기능공은 3.5개월과 3.6개월로 다소 짧았고, 조공과 보통인부는 4.7개월과 4.5개월로 약 1개월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음.

-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노동일수에서는 전체 평균은 21.5일이었는데, 십장은 23.0일, 기능공/조공/보통인부는 각각 21.5일/21.9일/20.2일로 나타났음.

- 월평균 노동일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기간이 11월과 12월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9월-11월에 일했던 월평균 노동일 수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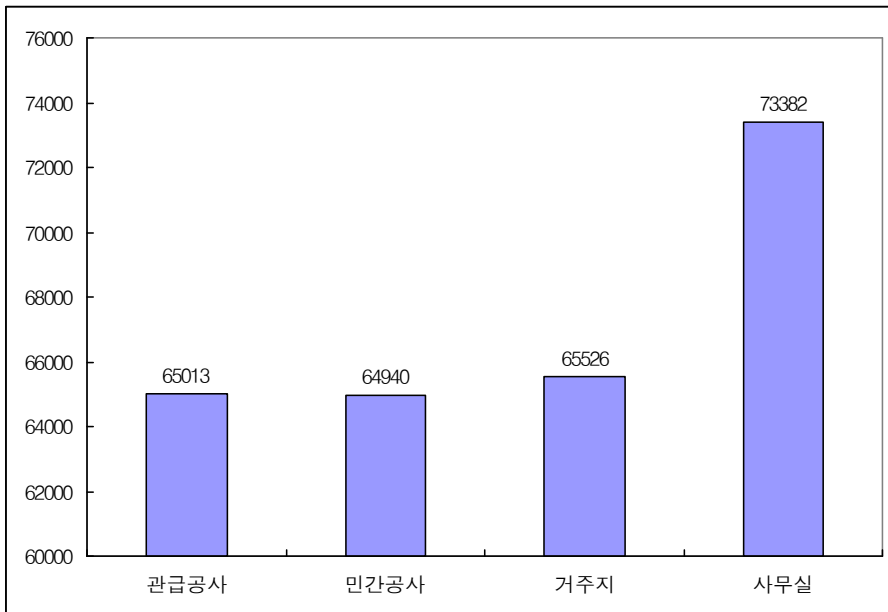
3) 임금과 노동시간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(평균일당)은 <표 2-3>과 <그림 2-12>와 같음.

<표 2-3> 대전 건설노동자 직위별 평균일당

구분	평균 일당
십장	83,897원
기능공	72,735원
조공	54,476원
보통인부	48,647원
전체	65,475원

<그림 2-12> 공사현장별 평균 일당 (단위: 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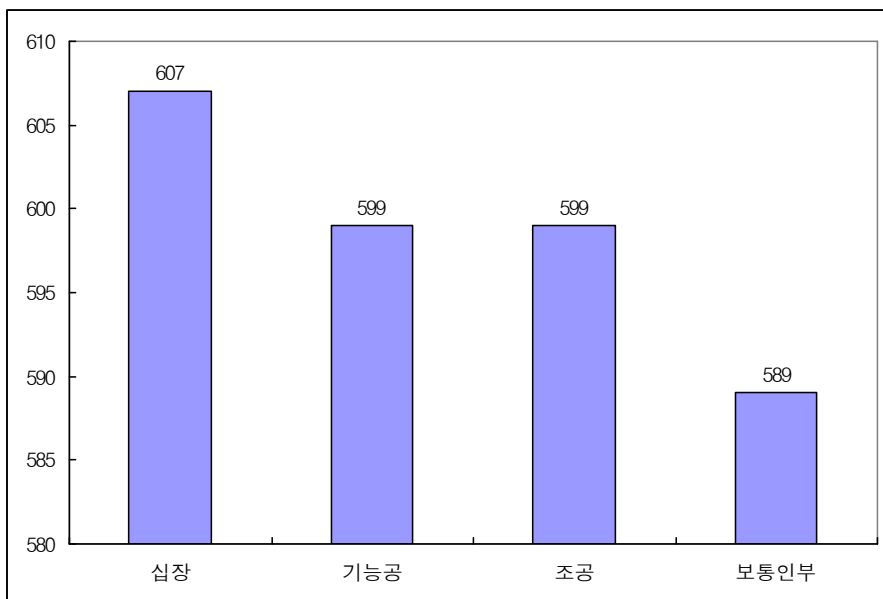
- 노동자의 일당은 전체적으로는 65,475원임. 이 중 기능공의 일당은 72,735원이었고, 조공은 54,476원 보통인부는 48,647원으로 숙련공이라 할 수 있는 기능공과 거의 2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음.

- 공사현장별로는 민간공사와 관급공사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, 평균 65,000원 대임.

○ 대전건설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9시간 57분이었음.

- 이것은 직위별, 공사현장별 차이가 별로 없었음. 십장은 607분(10시간 7분), 기능공은 599분(9시간 59분), 조공도 599분(9시간 59분), 보통인부는 589분(9시간 49분)임. 대략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보면 됨(<그림 2-13> 참고).

<그림 2-13> 본 현장의 1일 노동시간 (단위: 분)



○ 대전지역 건설현장에 근로기준법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음(<표 2-4> 참고).

- <표 2-4>에 나타난 것처럼,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해 노동자의 동의를 얻거나 수당을 주는 경우가 21.4%에서 36.3%에 머물고 있음.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정도가 30%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음.

<표 2-4> 근로기준법 준수정도

구분	준수정도
1)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초과시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	287(30.3%)
2) 주휴를 주거나 수당을 준다	222(23.8%)
3) 월차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준다	219(23.5%)
4)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준다	230(24.9%)
5)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준다	337(36.3%)
6) 퇴직금을 받아 본 적이 있다	199(21.4%)

- 이것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쌓여서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, 건설노동자의 보호와 노동자간 형평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짐.

○ 이 점은 근로기준법상 현재의 건설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(<그림 2-14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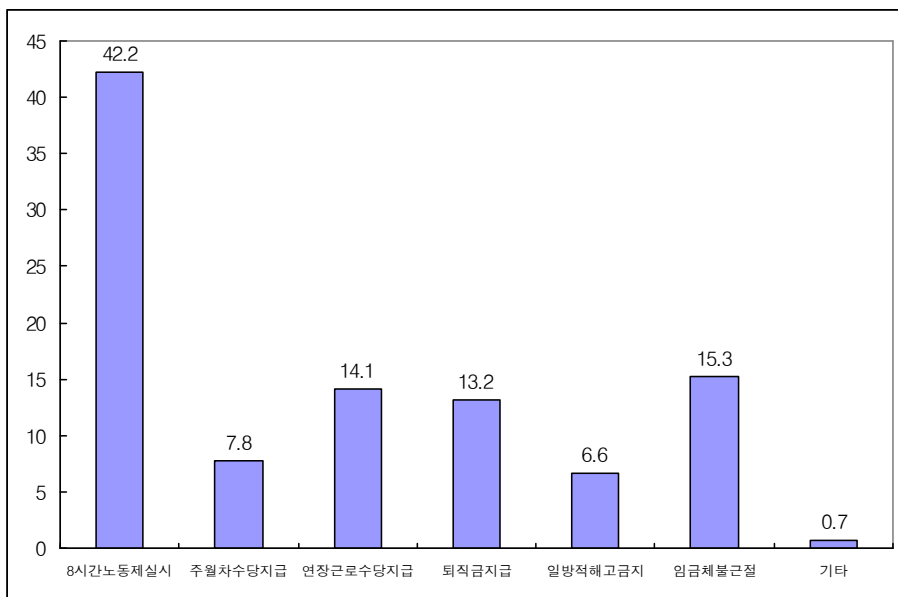
-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지적한 항목은 8시간 노동제 실시로 42.2%가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. 앞에서 본 것처럼 대전 건설노동자의 1일 노동시간은 약 10시간 정도로 근로기준법의 8시간규정과는 약 2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상태임.

- 이렇게 노동시간 단축과는 별도로, 연장노동을 했을 경우 그 시간에 대한

연장근로수당 및 주월차 수당에 대한 지급요구도 있음.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14.1%이고, 주월차수당 지급이 7.8%임.

- 임금체불의 문제도 15.3%의 노동자가 지적함으로써,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음.

<그림 2-14> 근로기준법상 우선 시행되어야 할 사항



○ <그림 2-14>에서 일방적 해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노동자가 6.6%인데,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, 노동자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아보았음.

<표 2-5> 부당해고 시 처리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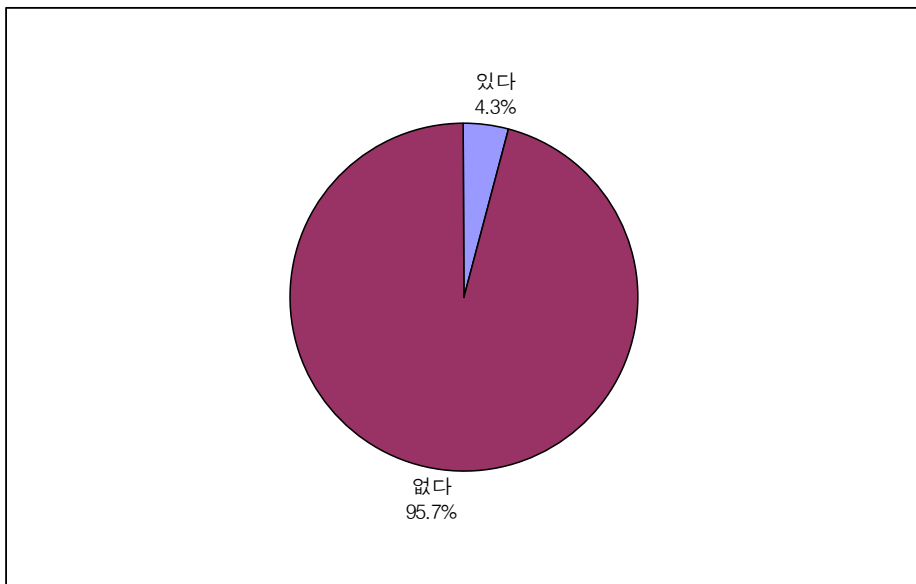
구분	응답비중
해고수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였다	58(8.9%)
그냥 참고 말았다	437(66.9%)
진정이나 소송을 걸어 복직했다	16(2.5%)
기타	142(21.7%)

-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음. 응답자의 66.9%가 ‘그냥 참고 말았다’고 응답하였고, ‘해고수당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였다’가 8.9%였음. 적극적으로 진정이나 소송을 걸어 복직한 경우는 2.5%에 불과함.

<표 2-6> 하청사장이나 십장이 도주 또는 구속된 경우의 임금은?

구분	응답 비중
항의해서 원청으로부터 받았다	212(22.5%)
소송을 걸어서 받았다	33(3.5%)
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다	53(5.6%)
못 받았다	209(22.2%)
그런 적이 없다	435(46.2%)

<그림 2-15> 휴업수당 받은 경험



○ 하청사장이나 십장이 도주 또는 구속된 경우에 노동자가 임금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알아보았음(<표 2-7> 참고).

-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는 46.2%였음.

-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‘항의해서 원청으로부터 받았다’가 22.5%, ‘못 받았다’도 22.2%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. 이런 상황에선 노동자들의 대응양태가 적극적 태도와 소극적 태도로 양극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음.

○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악천후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, 휴업수당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(<그림 2-15> 참고).

- 95.7%의 노동자가 그런 경우 휴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.

4) 불법 하도급

○ 건설산업에서는 재하도급 구조가 많아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. 재하도급의 문제점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을 알아보았음.

<표 2-8> 재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점

구분	응답 비중
노동강도가 세져 육체적인 피로가 심해진다	391(44.4%)
작업자간 관계가 경쟁적이고 대립적이 된다	93(10.6%)
안전을 돌볼 여지가 없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	187(21.3%)
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	146(16.6%)
결국은 일자리를 줄여 작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다.	63(7.2%)

-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노동강도가 강화된다는 것으로 44.4%나 차지하였고, 그 다음이 산업안전의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 21.3%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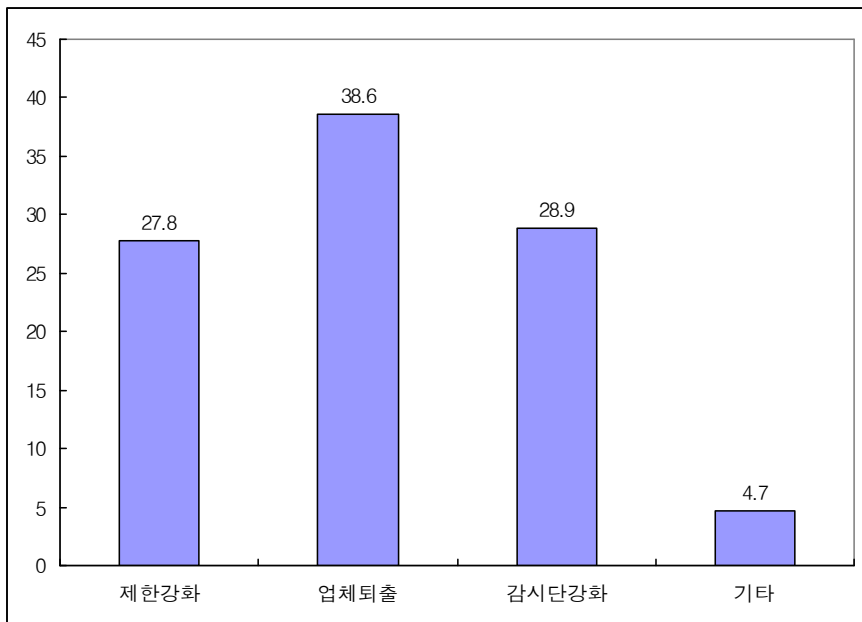
- 이밖에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, 작업장간 대립적인 된다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지적하였음.

○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법하도급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,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골고루 많은 비중의 응답이 나왔음.

- 업체에 대한 벌금 및 공사수주 제한 강화는 27.8%였고, 면허취소 등 업체 퇴출도 38.6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불법하도급을 시급히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임.

- 노조, 시민 등의 감시단 활동 강화도 28.9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<그림 2-16> 불법하도급 막는 방법



3. 건설현장의 노동자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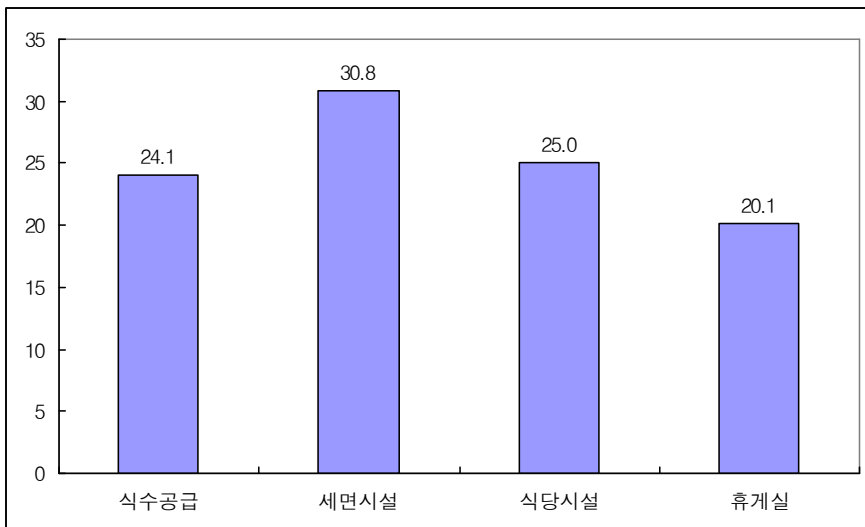
○ 건설현장은 노동자의 거주지 근처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, 상당 수의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. 이런 이유 때문에 노동자복지 중에서 건설현장의 현장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.

- 이런 현장복지 내용으로 필요한 복지부대시설과 식사의 질이 어떤가를 알아보았음.

○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부대시설은 항목에 나온 모든 시설에 대해 고르게 응답이 나왔음(<그림 2-17> 참고).

-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인 것은 세면시설로 30.8%의 노동자가 응답하였음. 그 다음이 식당시설 25.0%, 식수공급 24.1%, 휴게실이 20.1%의 순이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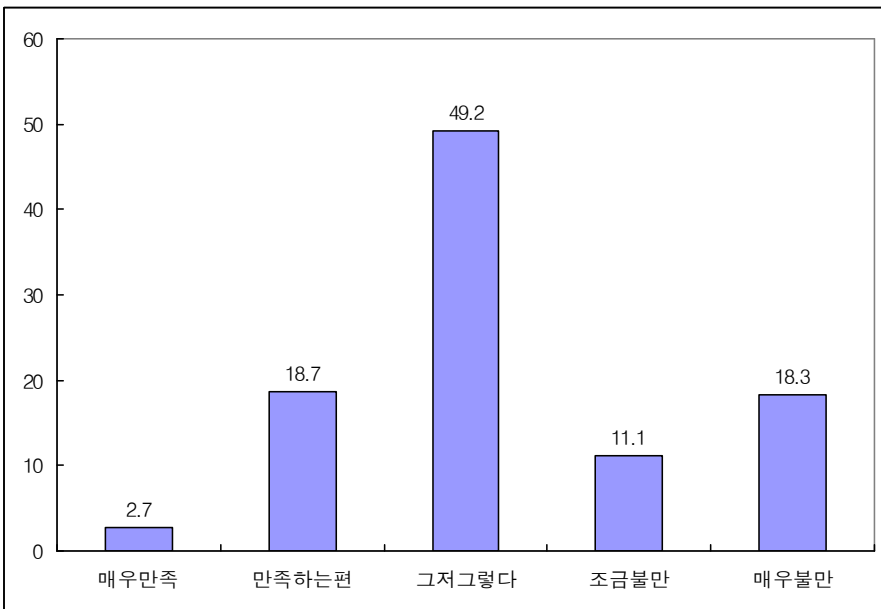
<그림 2-17>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부대시설



○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났음(<그림 2-18> 참고).

- 만족한다는 응답은 21.4%였고,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29.4%로 식사의 질에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.

<그림 2-18>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



○ 건설현장에서 특히 강조되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교육에 대한 노동자의 의견을 알아봄.

- 안전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43.8%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17.8%나 되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안전교육 이전에 작업관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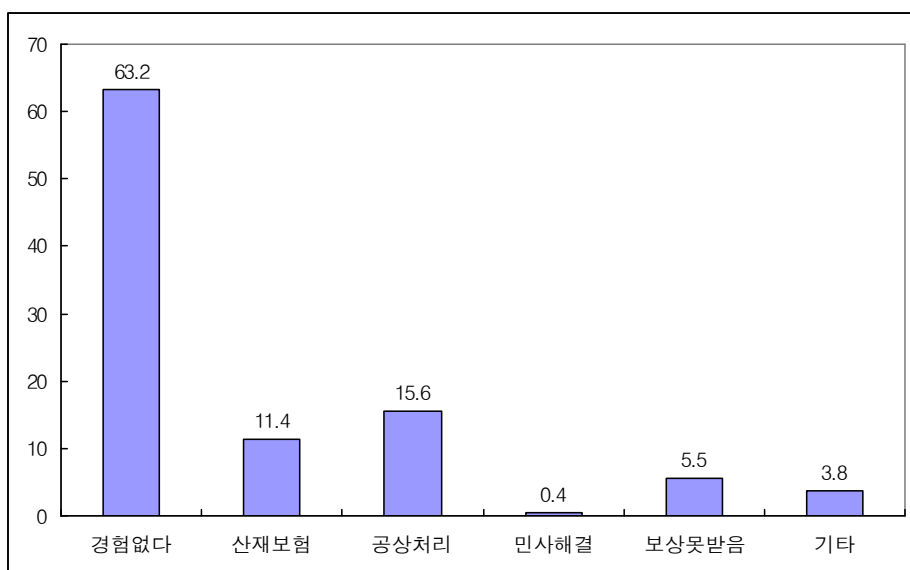
전보호장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비중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<표 2-9>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 등에 대한 의견

구분	응답 비중
형식적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	168(17.8%)
도움이 된다	413(43.8%)
안전보호장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	149(15.8%)
안전교육을 하기 전에 일을 빨리 그리고 많이 시키는 풍토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	105(11.1%)
안전보호장비를 자비로 구입하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	108(11.5%)

○ 실제로 산재(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)를 당한 경우,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알아보았음.

<그림 2-19> 최근 5년간 산재를 당한 경우 처리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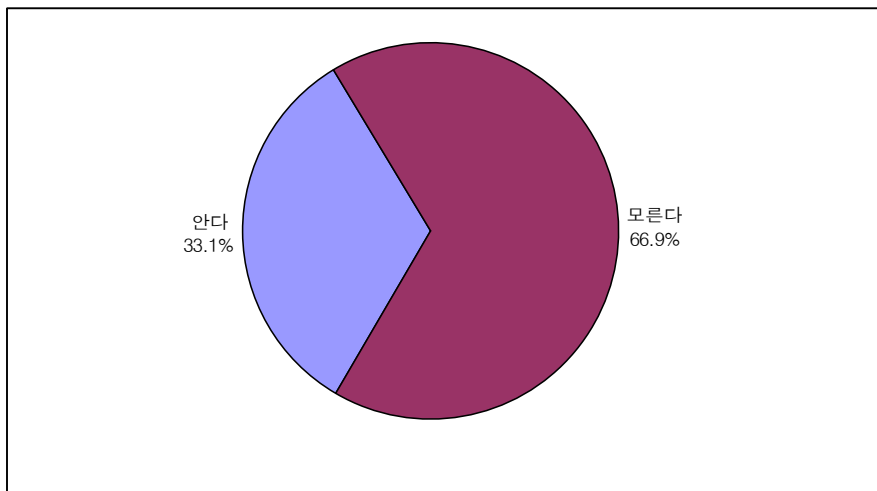


- 산재를 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3.2%임.

-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 중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된 노동자가 15.6%,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가 11.4%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. 하지만 보상 못 받은 경우도 5.5%나 됨.

○ 「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‘고용관리책임자’를 두게 되어 있는데, 대전지역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의 고용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음.

<그림 2-19> 고용관리책임자 인지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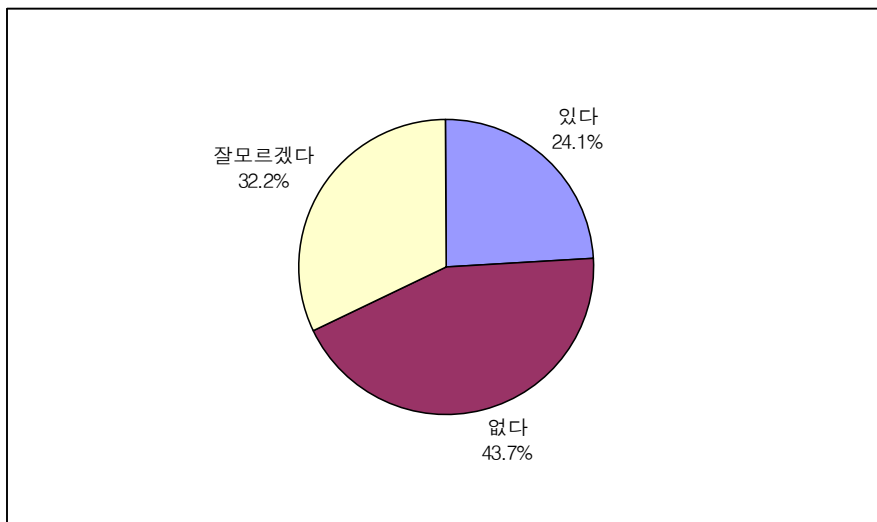


- 건설현장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고용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는 대전건설노동자는 33.1%에 불과함. 거의 3분의 2가 넘는 노동자는 고용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음.

○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, 32.2%의 노동자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.
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24.1%였음.
- 공사현장별로 보면, 관급공사의 경우는 32.7%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, 민간공사는 8.7%에 머물어 있음.
- 또 직위별로 보면 숙련공의 고용보험 가입이 좀 높아서 십장의 39.2%, 기능공의 25.9%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 비해, 조공은 20.0%, 보통인부는 15.1%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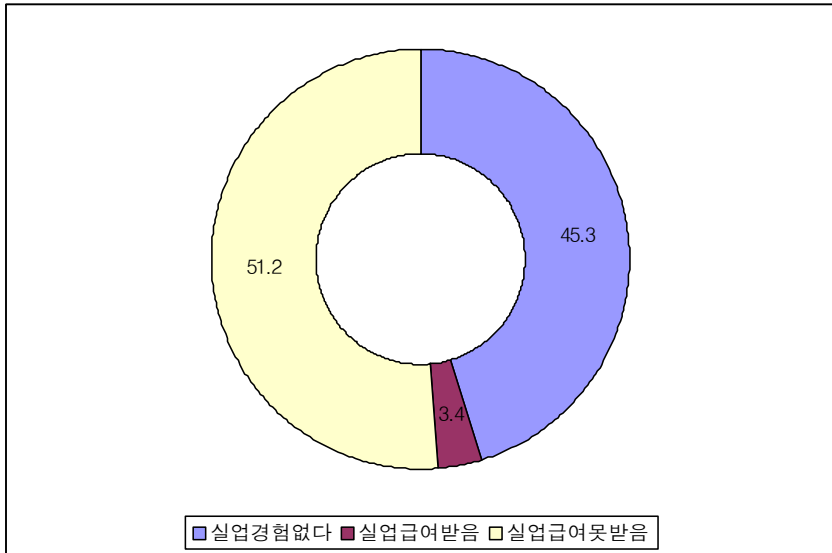
<그림 2-20> 고용보험 가입 여부



○ 이처럼 노동자의 24.1%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, 최근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는 3.4%에 불과함(<그림 2-21> 참고).

- 실업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45.3%를 예외로 하면, 실업경험을 있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경우가 51.2%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. 거의 대부분의 건설노동자가 아직은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<그림 2-21> 최근 1년간 실업급여 수급여부



○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29.1%였고,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의 비중이 68.3%에 이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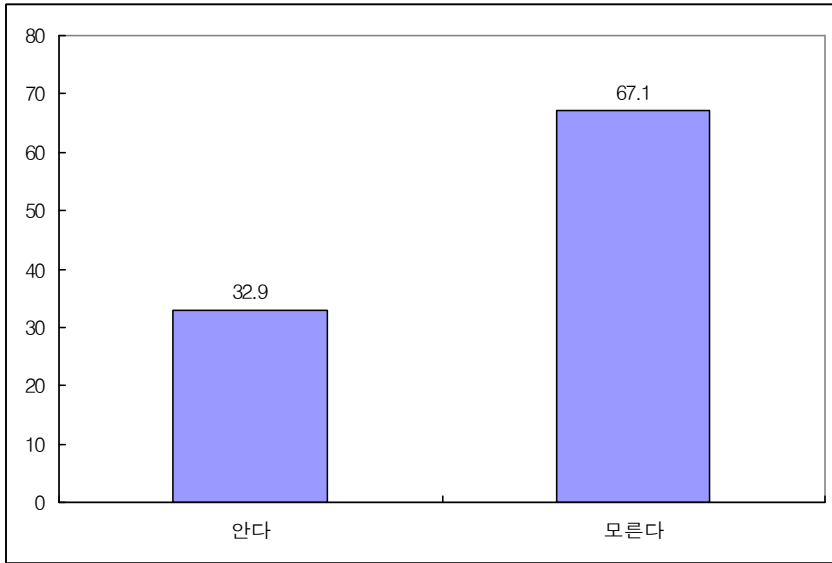
<표 2-10> 실업급여를 타지 못한 이유

구분	응답 비중
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	193(29.1%)
해당되는지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	347(52.3%)
해당되는지 알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았다	106(16.0%)
기타	18(2.7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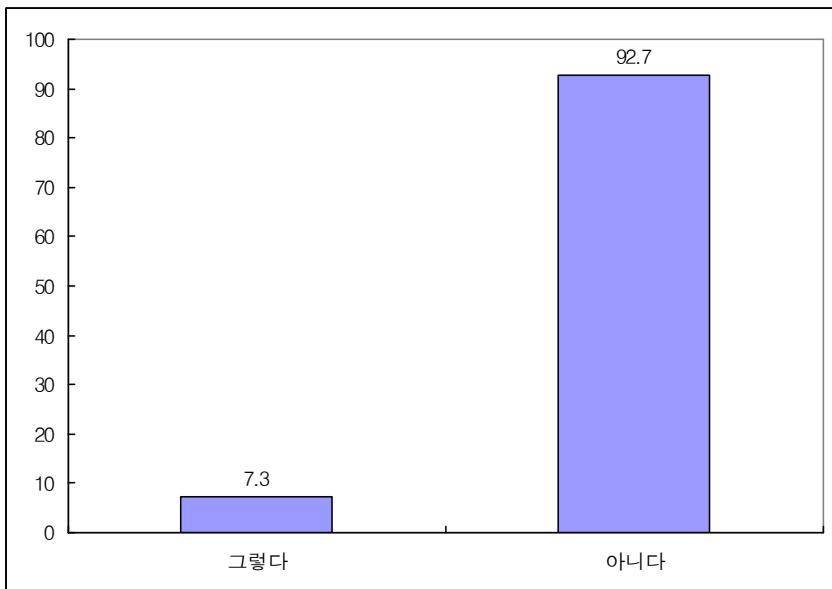
- 게다가 자신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52.3%나 되어,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인지정도가 아직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.

- 절차가 번거로워 신청하지 않았다는 노동자도 16.0%나 되어, 제도의 합리화 및 효율화가 시급함을 보여 줌.

<그림 2-22> 퇴직공제제도 인지유무



<그림 2-23> 퇴직공제수첩 발급받았는지 여부



○ 건설노동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해 최근에(1998년) 도입된 퇴직공제제도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단지 32.9%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, 퇴직공제수첩을 발급받은 노동자는 7.3%에 불과함(<그림 2-22>와 <그림 2-23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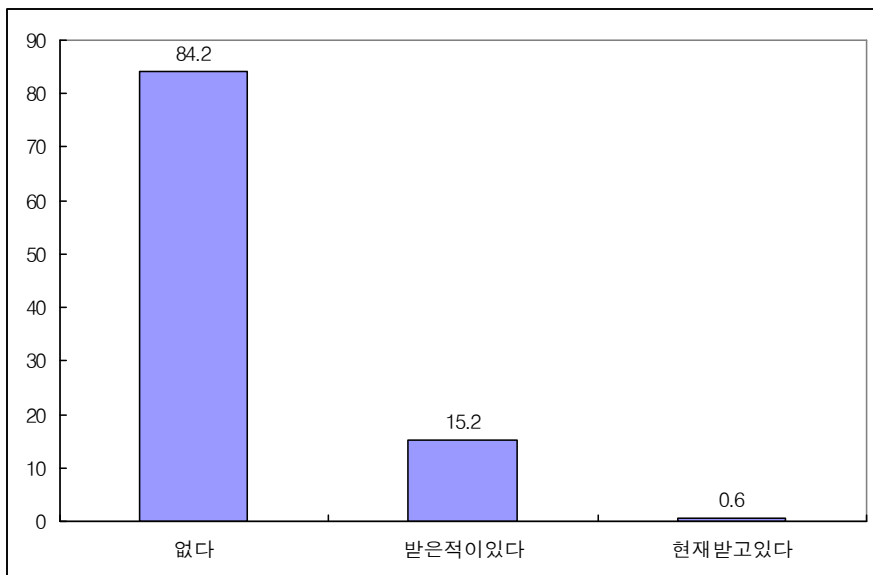
- 즉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정도도 낮은 수준이고,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퇴직공제수첩의 발급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.

-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의 홍보와 올바른 시행 및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 줌.

4. 직업훈련

○ 건설노동자의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보았음. 건설노동자의 기능은 어떤 경로를 통해 습득되는 지를 알아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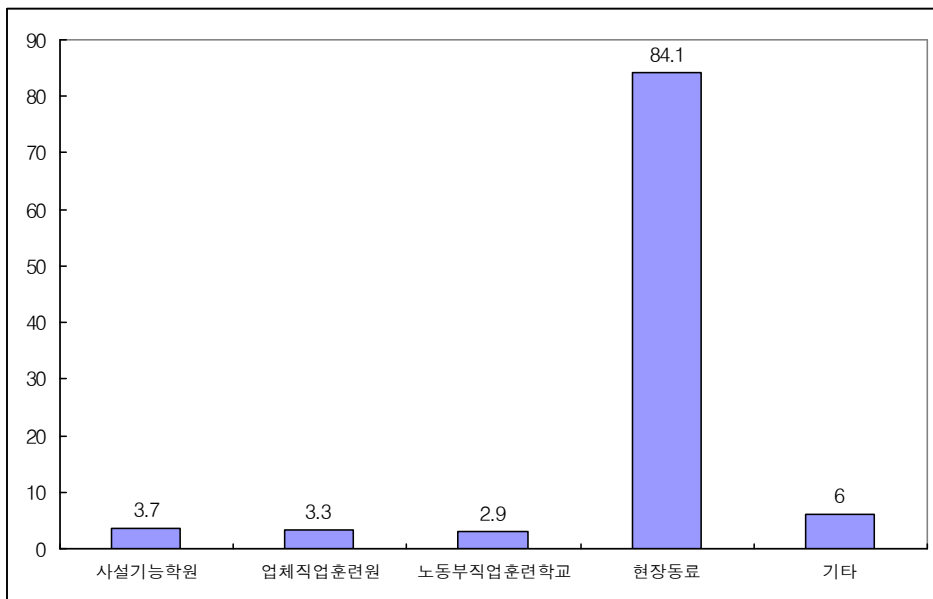
<그림 2-24> 직업훈련 경험



- 대다수의 건설노동자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 노동자의 84.2%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었음. 나머지 15.8%의 노동자는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노동자임.

○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기능습득경로도 기업의 직업훈련원이나 노동부의 직업훈련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게 함.

<그림 2-25> 현재 기능 습득경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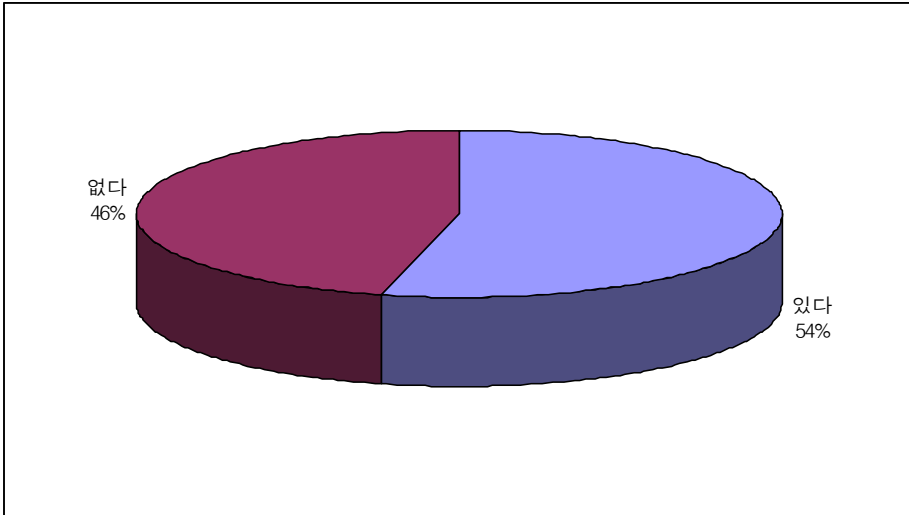
- 대부분의 기능습득은 현장동료로부터(84.1%) 이루어지고 있고, 사설기능학원이 3.7%, 업체 직업훈련원이 3.3%, 노동부 직업훈련학교가 2.9%에 불과함.

- 이는 기능습득 경로가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, 시급이 직업훈련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.

○ 건설노동자의 직업재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, 노동자의 54%가 필요하다고 응답함.

- 건설산업에서도 새로운 기법이 많이 도입됨으로써, 기능향상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.

<그림 2-26> 직업재훈련(기능향상 훈련)의 필요성



<표 2-11> 직업재훈련 하지 못하는 이유

구분	응답 비중
체계적이고 실습위주의 교육이 없어 현장에 실효성이 없다	102(15.5%)
직업재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를 해결하기 어렵다	253(38.5%)
직업재훈련을 하더라도 단가인상에 반영이 안된다	41(6.2%)
현장 일이 너무 늦게 끝나므로 시간상 어렵다	174(26.5%)
직업재훈련 기간동안 고용유지가 보장이 안된다	87(13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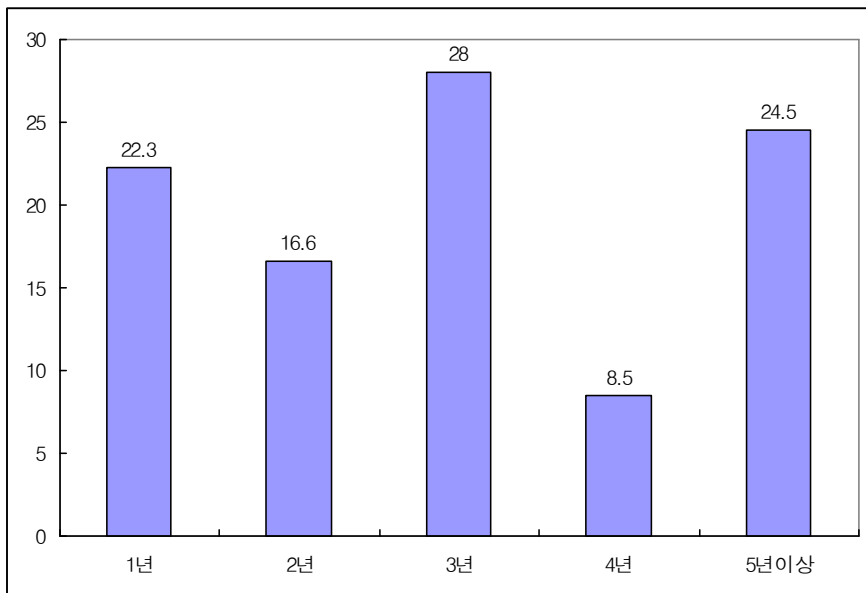
- 그런데 직업재훈련이 필요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‘직업재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를 해결하기 어렵다’가 38.5%에 달하고 있고, ‘현장 일이 너무 늦게 끝나므로 시간상 어렵다’는 응답도 26.5%에 달함. 제도적으로 직업재훈련

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.

○ 한편 기능공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 28%, 5년이상이 24.5% 1년이 22.3% 순으로 나타났음.

- 이것은 십장과 기능공의 경우는 3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반면, 조공과 보통인부는 1년인 경우가 많음. 즉 숙련공과 비숙련공이 필요한 숙련기간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<그림 2-27> 기능공으로 되는 데 걸리는 기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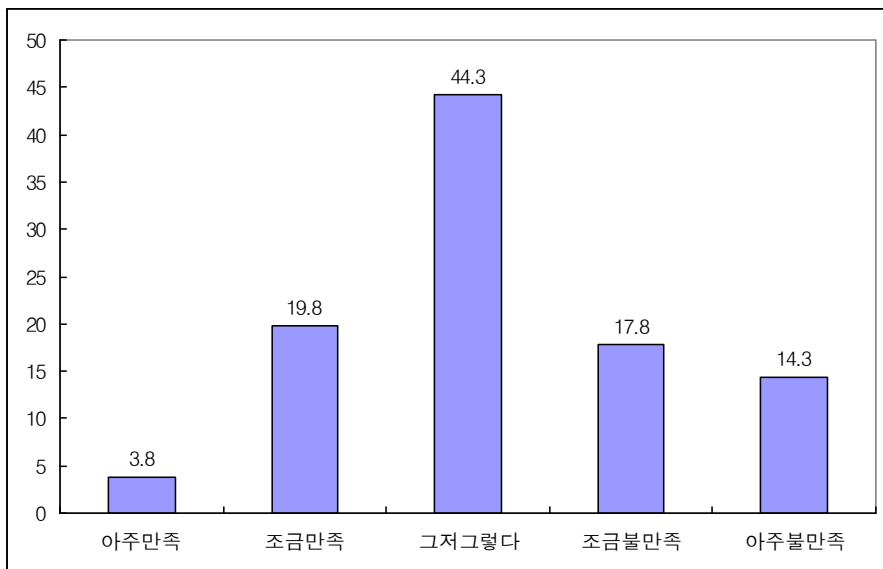
5. 직업관련 의식 및 권리의식

1) 직업관련 의식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직업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44.3%로 가장 많았음(<그림 2-28> 참고).

- 직업만족도에서 ‘불만족’의 비중은 32.1%, ‘만족’의 비중은 23.6%로 건설노동자로서의 직업만족에 있어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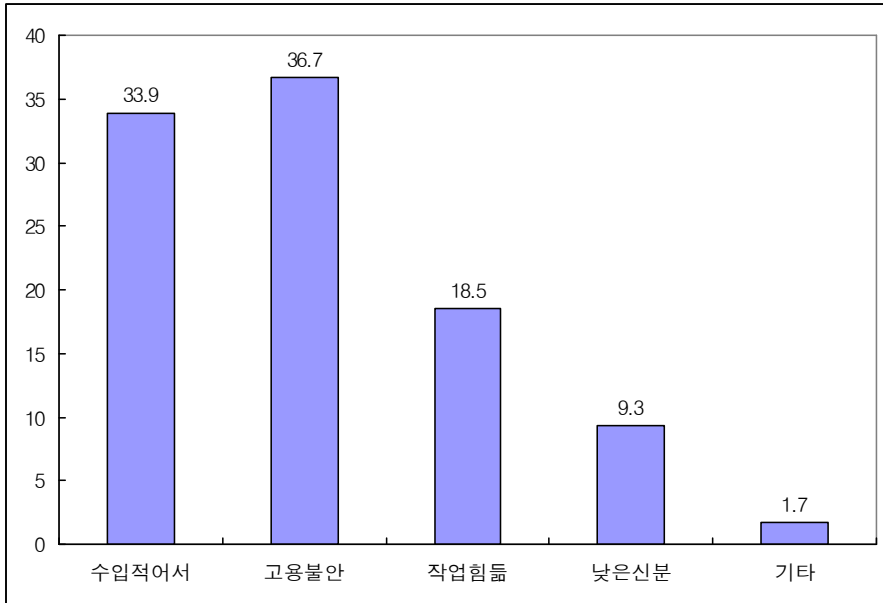
<그림 2-28> 건설노동자로서의 직업만족도



○ 건설노동에 종사하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, ‘수입이 적어서’(33.9%)와 ‘고용불안정’(36.7%)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(<그림 2-29> 참고).

- ‘작업이 힘들다’는 비중도 ‘18.5%나 되어서 직업불만족의 한 이유가 되고 있음.

<그림 2-29>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



○ 대전건설노동자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약간 불만족인 상태인데,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건설노동자로 앞으로 일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, 54.1%가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응답함(<그림 2-30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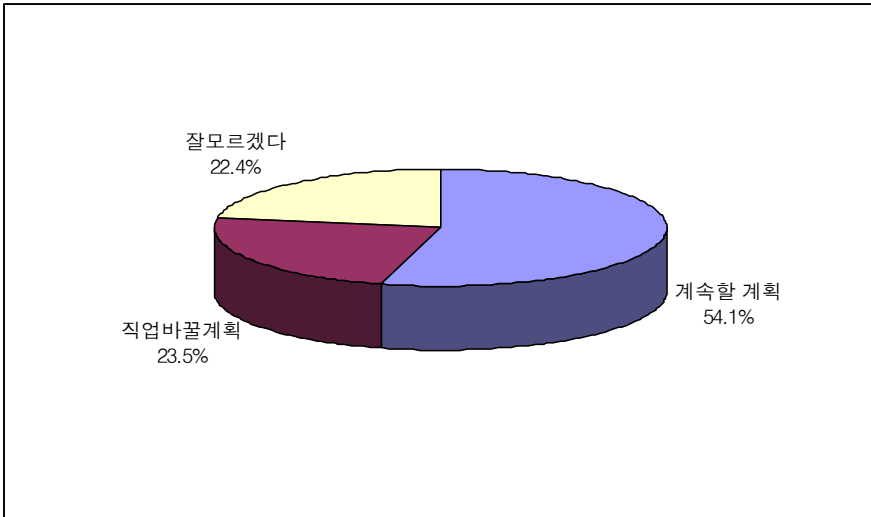
- 직업을 바꿀 계획인 경우는 23.9%, 잘 모르겠다도 22.4%에 달함. 즉 거의 50%에 가까운 노동자가(46.3%) 직업을 바꿀 계획이거나 계속해서 건설노동을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인 셈임.

○ 한편, 건설노동을 계속 할 생각인 경우에 그 이유로는 직업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(<그림 2-31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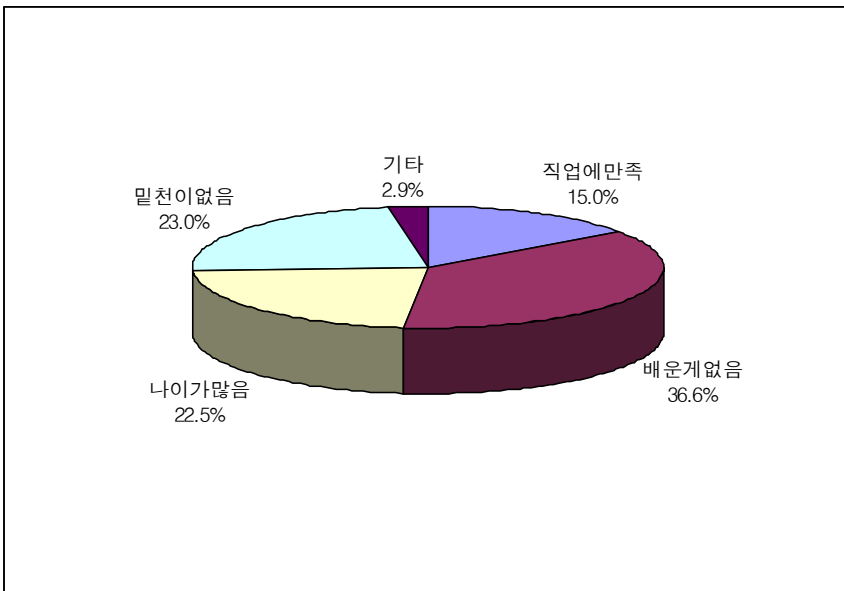
- ‘다른 직장을 얻고 싶지만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다’(36.6%), ‘장사를 하고 싶지만 밑천이 없다’(23.0%), ‘다른 직장을 얻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 어렵다’(22.5%) 등의 응답이 많음. 이 직업에 그런대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15.0%

에 불과함.

<그림 2-30> 건설노동자로 앞으로 일할 계획



<그림 2-31> 건설노동자로 계속 일할 생각이라면 그 이유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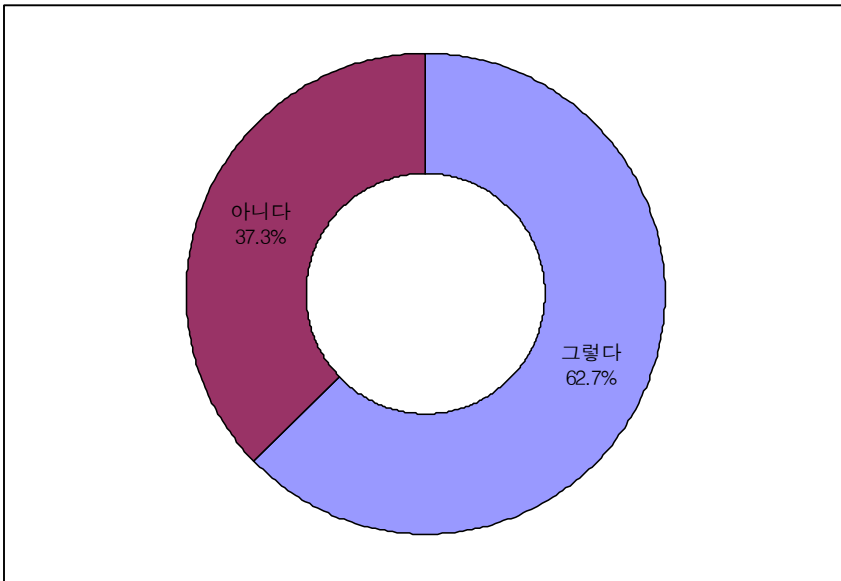


○ 대부분이 비정규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하는지를 알아보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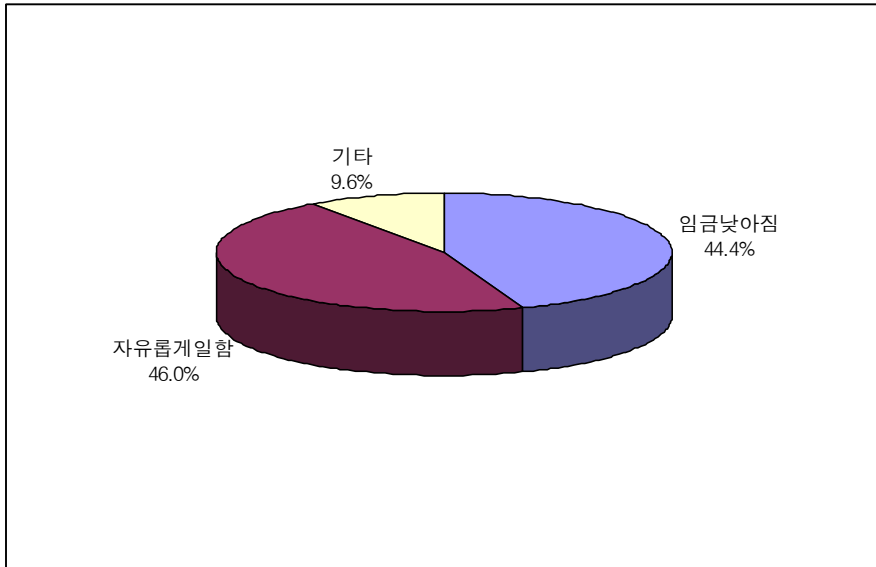
- 노동자의 62.7%가 정규직이 되고 싶다고 응답하여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- 정규직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‘지금 처럼 간섭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좋아서’가 46.0%로 나왔고, ‘정규직이 되면 임금(단가)이 낮아질 것 같아서’가 44.4%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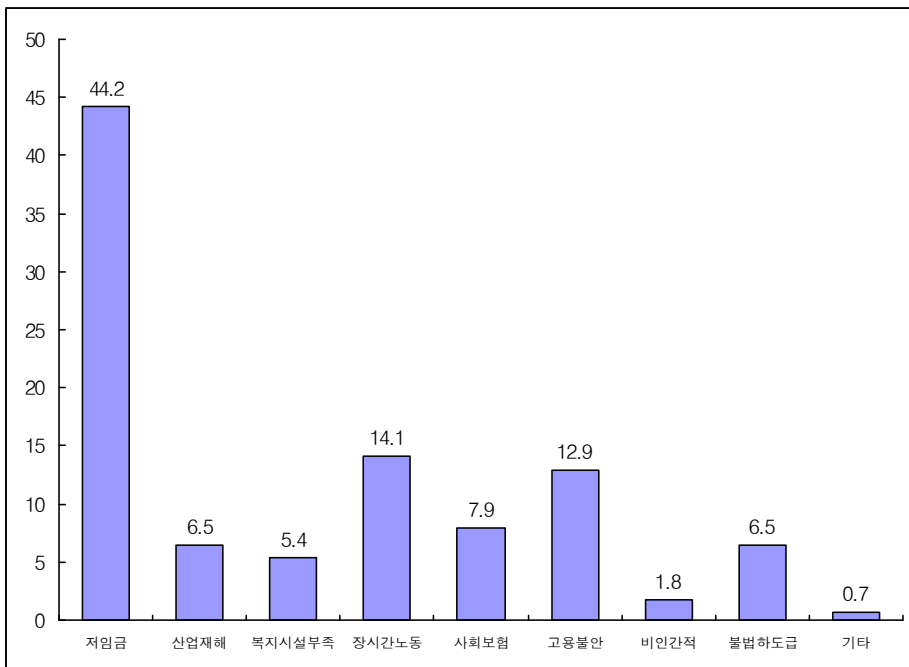
<그림 2-32> 정규직 희망여부



<그림 2-33> 정규직 원하지 않는 이유



<그림 2-34> 현장의 문제점 중 가장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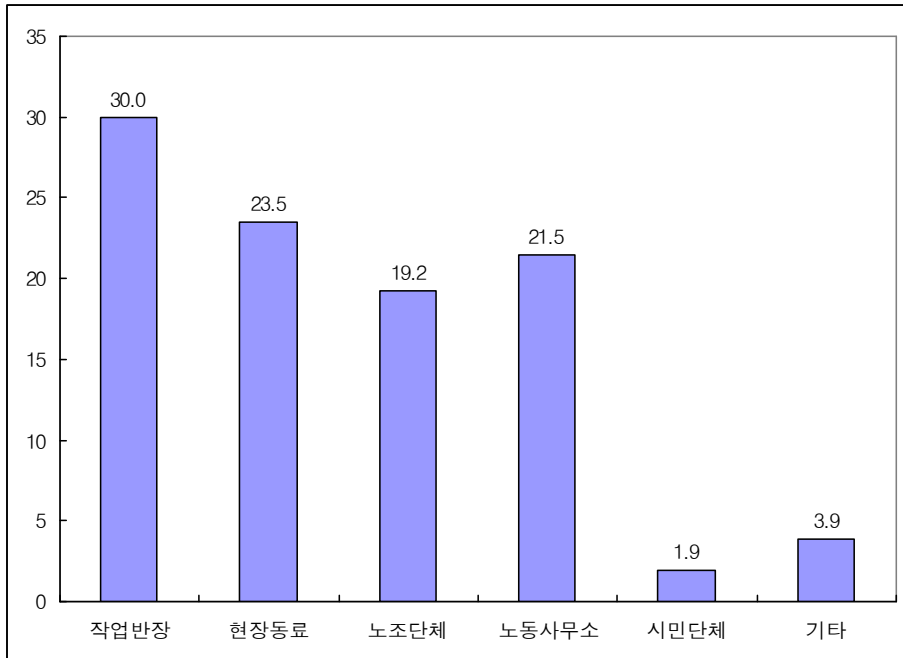
○ 한편 건설현장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44.2%의 노동자가 ‘저임금’문제를 지적하였음.

- 그 다음이 장시간노동(14.1%)와 고용불안(12.9%)순이었음. 이는 건설노동자의 커다란 관심은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임금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.

2) 노동조합관련 의식 및 권리의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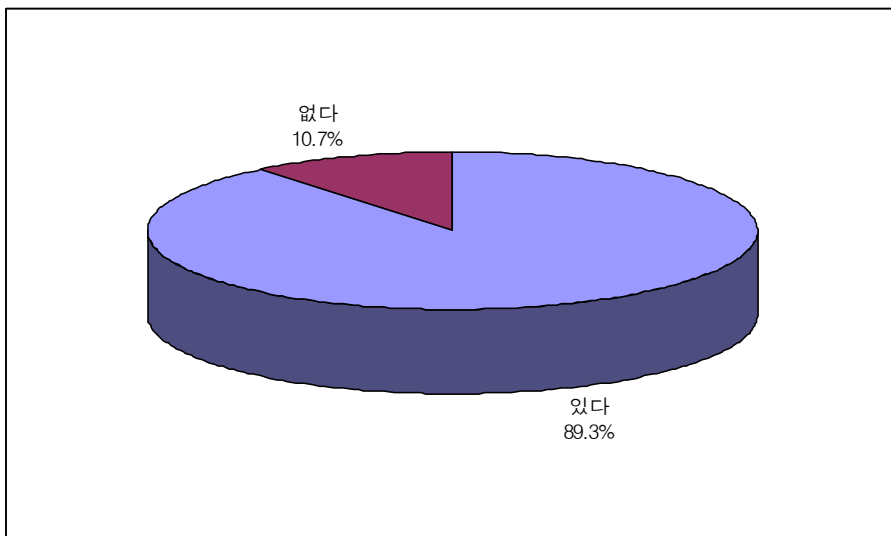
○ 현장생활 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어디에 상담할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문항에 모두 많은 응답을 함으로써 확실한 상담상대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음(<그림 2-35> 참고).

<그림 2-35> 부당대우 상담상대



- 노동자의 상담상대는 작업반장, 현장동료가 많았고 노동사무소나 노동조합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- 아직 확실한 노동자의 상담상대는 아니지만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(89.3%) 인정하고 있음. 이는 숙련공이든 비숙련공이든 차이가 거의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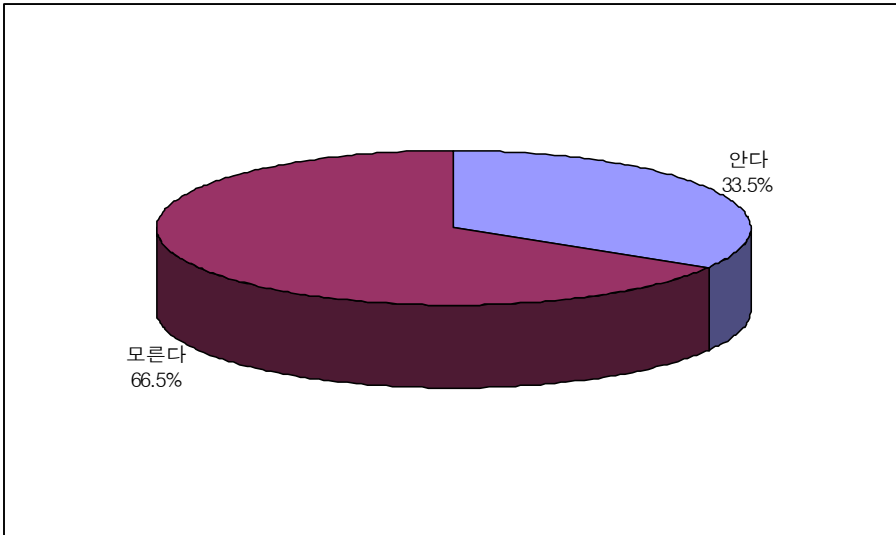
<그림 2-36> 노동조합의 필요성



○ 건설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건설노동자의 노조(건설연맹)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모르고 있음(<그림 2-37> 참고).

- 응답자의 66.5%가 건설노동자 노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. 노조의 존재를 알고 있는 노동자는 33.5%에 불과함.
- 이것은 건설노동자의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.

<그림 2-37> 노조에 대한 인지도



○ 노동조합이 가입권유를 한다면 가입하겠다는 노동자의 비중은 66.0%나 되었음(<그림 2-38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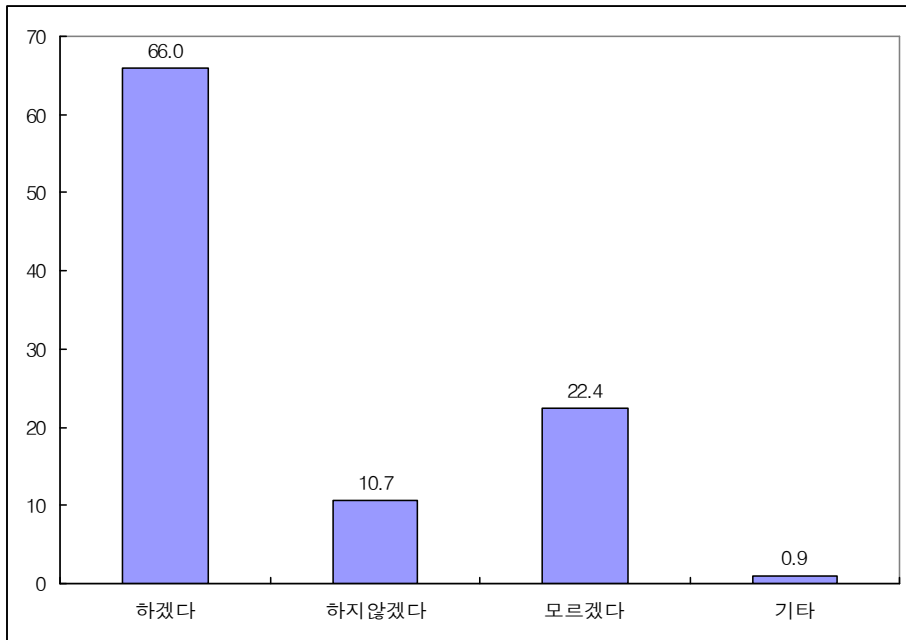
- 이는 건설노동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, 실제 노조활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실천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.

○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(<그림 2-39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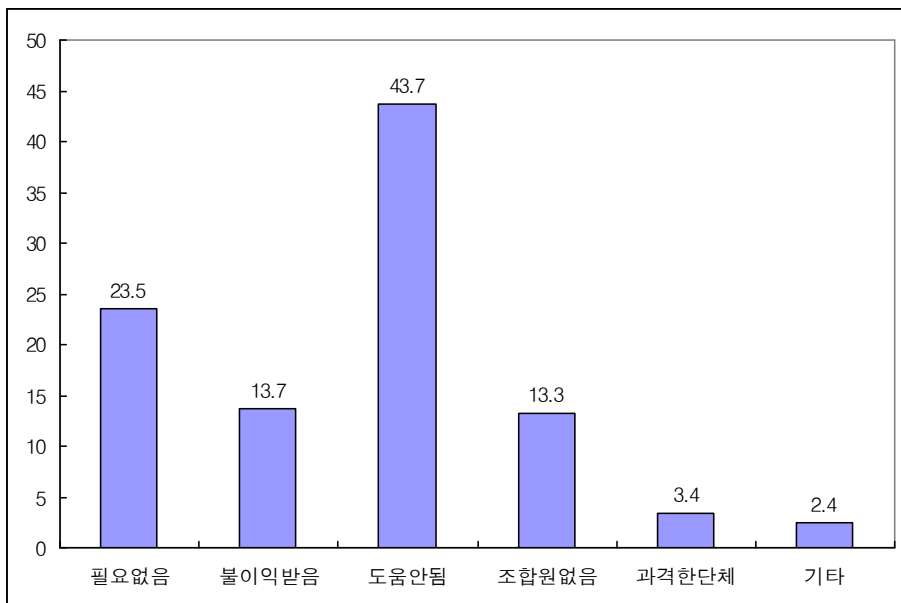
-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(23.5%), 노동조합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(43.7%), 노조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(13.7%)을 많은 노동자가 하고 있음.

- 또 주위 동료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3.3%나 되었음.

<그림 2-38> 노조 가입의사



<그림 2-39>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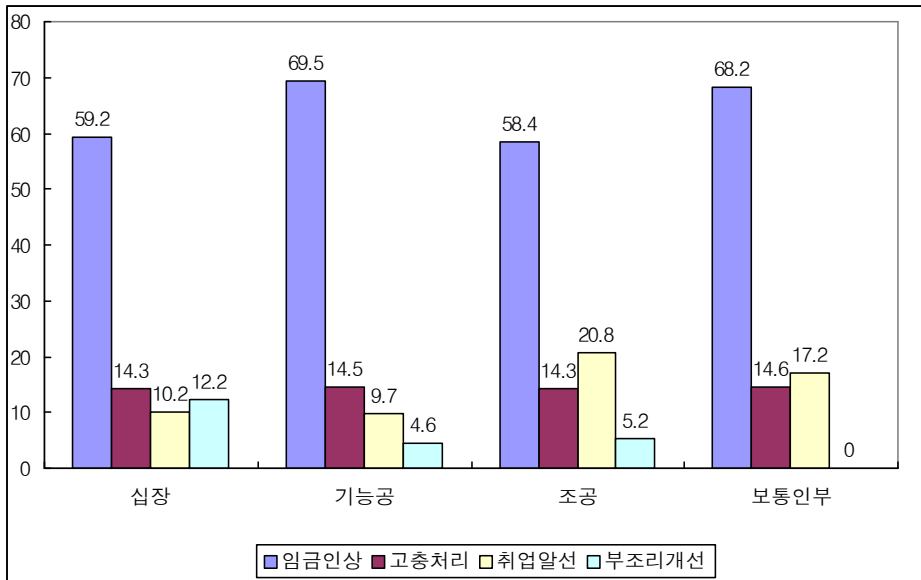


○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얻고 싶은 혜택에 대해서는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(<그림 2-40> 참고).

- 반면 조공과 보통인부 등 비숙련공들은 좀더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것을 반영해서 ‘취업알선’이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 반면 십장과 기능공은 고충처리가 2번째를 차지함.

- 또 십장의 경우는 건설현장의 부조리개선에 대해 12.2%가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직위의 건설노동자보다 (상대적으로) 좀더 사회적인 시야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<그림 2-40> 노조가입 시 얻고 싶은 혜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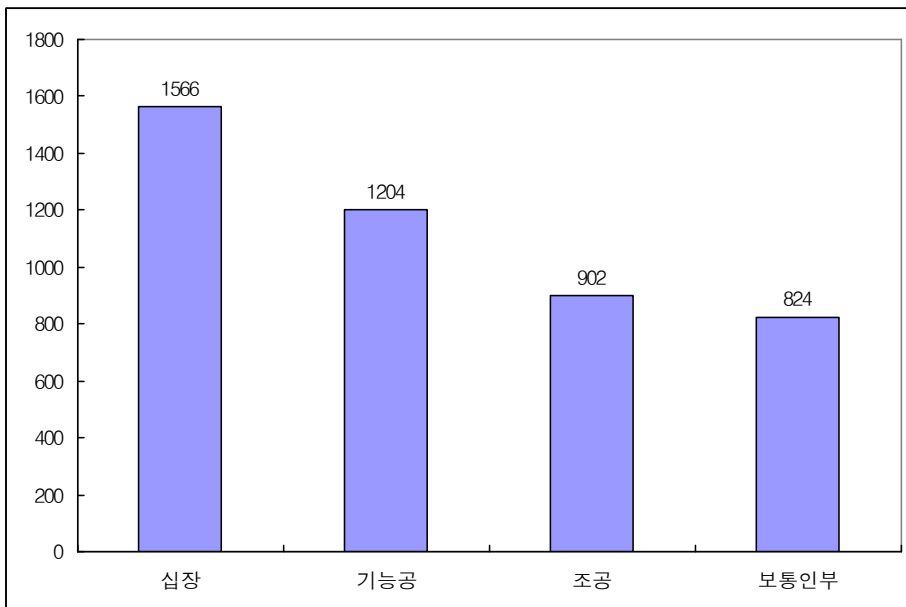
6. 생활실태

○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생활실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.

- <그림 2-41>은 노동자의 연소득총액임. 십장이 1,566만원, 기능공이 1,204만원, 조공이 902만원, 보통인부가 824만원으로 나타남. 이것은 12개월로 나누면 1달에 70만원~130만원 정도 선임. 이 정도 소득은 성인 1명이 살기에도 바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.

-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(본인 포함)가 십장은 3.5명, 기능공은 3.6명, 조공은 3.6명, 보통인부가 3.5명으로 대부분 3~4명이 함께 살아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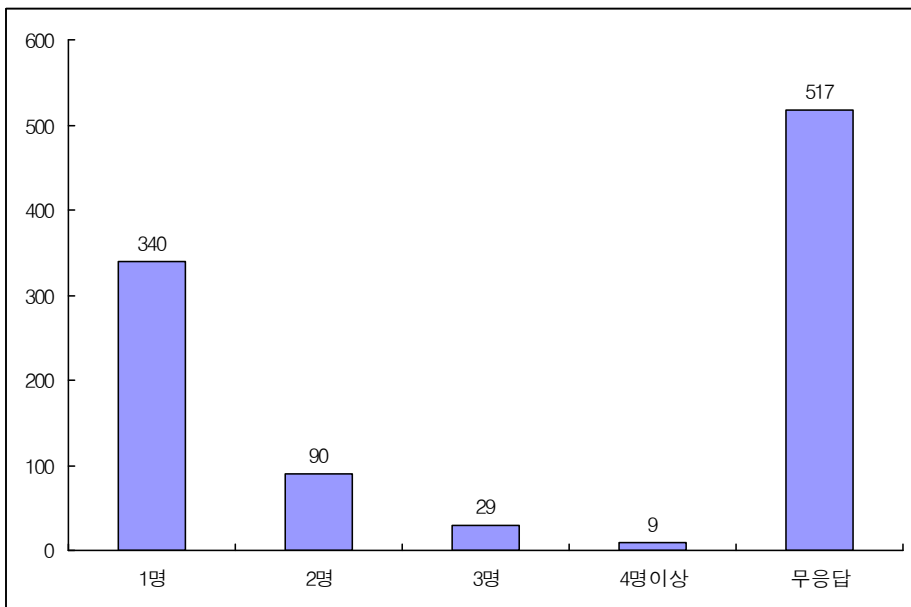
<그림 2-41> 지난 1년간 직위별 연소득총액 (단위: 만원)



○ 물론 본인 외에 수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가구에 따라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음.

-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건설노동자 1명이 수입원이거나, 자신 외에 1명이 수입원인 경우(340명, 34.5%)임. 한 가구에 2명의 수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경제 자체로는 넉넉한 살림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임(<그림 2-42> 참고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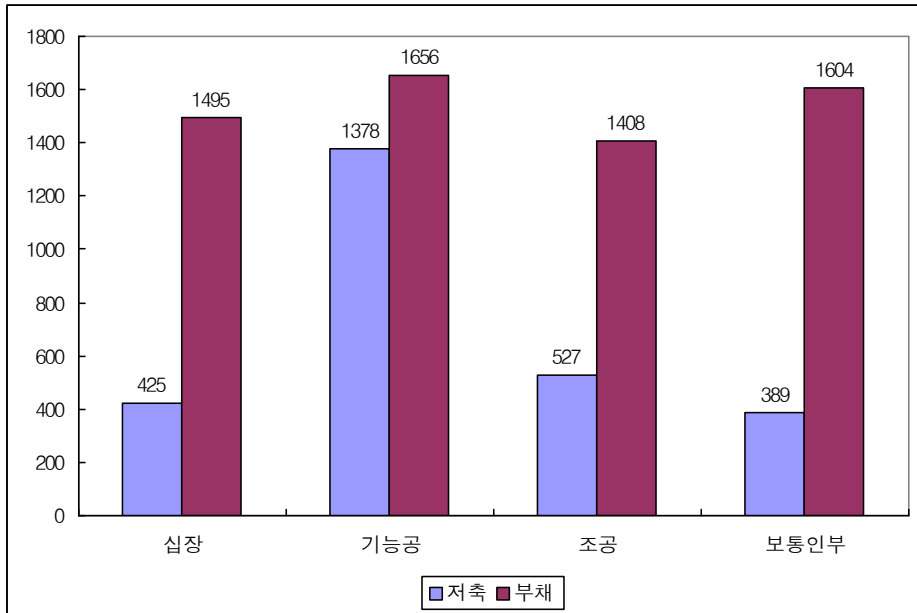
<그림 2-42> 경제활동가족 수(본인 제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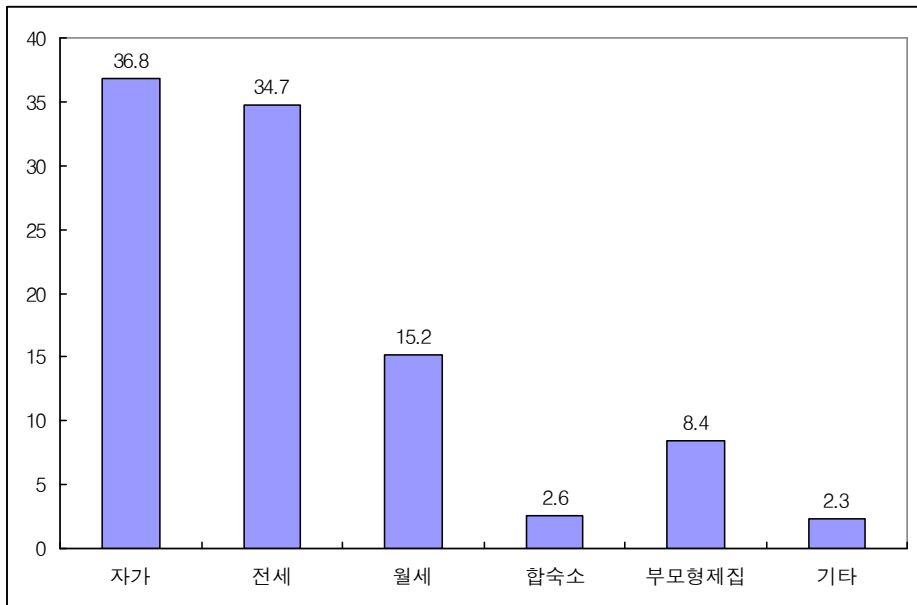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저축과 부채액수를 보면, 크게 보아 저축은 기능공이 다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, 부채는 모든 노동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.

- 저축은 기능공을 제외하고는 약 400만원~500만원대이고, 부채는 약 1,500만원~1,700만원 정도로 나타났음.

<그림 2-43> 건설노동자의 저축액과 부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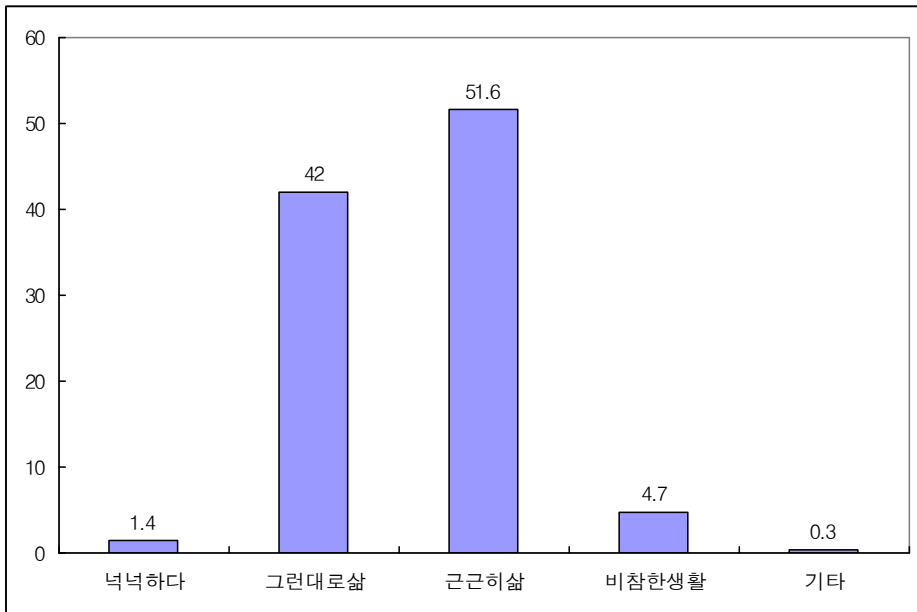
<그림 2-44> 노동자의 주거형태

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주거형태는 자가와 전세가 각각 36.8%와 34.7%를 차지하였고, 월세를 사는 경우도 15.2%나 되었음(<표 2-44> 참고).

- 부모형제집(즉 친척집)에서 사는 경우는 8.4%였고, 합숙소에서 사는 경우는 2.6%임.

<그림 2-45> 노동자의 생활형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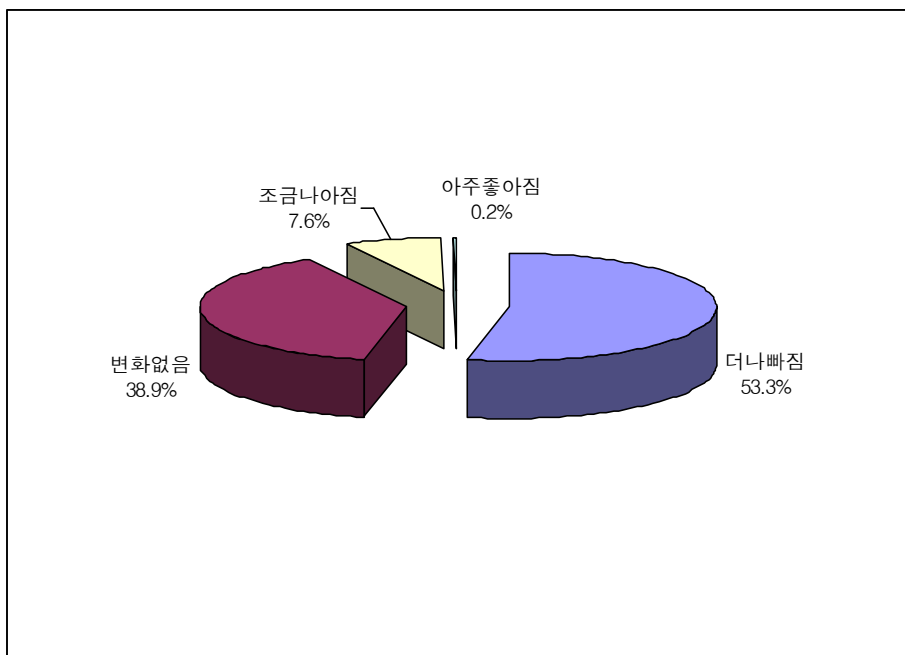
○ 생활형편에 대해서는 ‘근근히 살아간다’가 51.6%, ‘넉넉하지 않으나 그런 대로 살만하다’는 42.0%로 나타남(<그림 2-45> 참고).

- 비참한 생활(4.7%)이나 넉넉한 생활(1.4%)은 작은 수의 노동자만이 응답함으로써 그런 대로 보통 수준의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.

- IMF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서는 ‘더 나빠졌다’가 53.0%로 나타났으며, ‘변화없음’이 38.9%였음. 이에 비해 조금 나아지거나(7.6%) 아주 좋아진 경우는

(0.2%)는 합해서 7.8%에 불과함(<그림 2-46>참고).

<그림 2-46> IMF 위기 때와 비교한 생활형편



제3장. 결론: 요약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는 직위별로는 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공(60.6%)이 가장 많고 십장은 5.4%이며, 비숙련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인부(잡부)는 20.7%이고 조공은 10.1%임.

- 연령으로는 30대(26.0%), 40대(38.1%), 50대(23.4%)에 집중되어 있고, 학력별로는 고졸(38.5%)과 중졸(30.2%)에 집중되어 있음.

- 공사현장별로는 관급공사(58.9%)의 비중이 가장 많아서 민간공사(15.3%)의 거의 4배 가까운 수의 노동자가 응답하였음.

1. 근로계약

○ 근로계약에서는 서면계약이 50.2%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. 이것은 관급공사의 건설노동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. 관급공사에서는 서면계약의 비중이 62.2%로 압도적으로 높아서 민간공사의 45.0%보다 17.2%나 높은 것을 보면 확인됨.

- 서면계약 비중은 직위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십장(64.7%)과 기능공(59.0%)이 조공(29.3%)과 보통인부(31.6%)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음. 이 점은 서면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숙련공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.

○ 근로계약 과정상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들, 즉 '취업규칙을 보여주며 현장에 비치했다'(31.7%), '퇴직공제제도의 가입유무에 대해 알려주었다'(21.9%), '근로계약 체결일은 있으나 공사만료시점이 없다'(46.7%), '고용보험 가입유무를 알려준다'(28.5%)와 같은 사항에 대해 많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.

- 한편 '8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 등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강요당했다'는 문항에 대해서는 건설노동자의 단지 22.2%만이 응답했음. 이것은 실제로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10시간 정도의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, 10시간 노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, 관행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줌.

2. 노동시장: 구직경로와 구직활성화 방안

○ 건설노동자는 작업현장이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직경로와 노동시장의 문제가 중요함.

○ 구직경로에 있어서는 공식적 구직경로가 역할을 거의 못해서 공공직업소개소(2.0%)를 통해서 구직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동료 건설노동자(50.9%)나 십장(29.9%)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.

- 그런데 구직활성화 방안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옴. 고용안정센터 활성화(43.2%)와 노조기능 확충(35.4%)이 절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음.

- 한편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구직경로에서도 5.8%밖에 안 되었고,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노동자(52.4%)가 '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거나'(29.9%) '용역업체는 없어져야 한다'(22.5%)는 응답을 하였음. 용역을 통해 일을 구한 적인 없는 노동자가 42.6%인 것을 합치면 95%의 노동자가 용역업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.

○ 1년 중 실업기간은 전체평균으로는 3.9개월이었고, 십장과 기능공은 3.5개월과 3.6개월로 짧았고, 조공과 보통인부는 4.7개월과 4.5개월로 숙련공에 비해 실업기간이 1달 정도 긴 편임.

- 월평균 노동일수는 전체평균은 21.5일이었음. 십장이 23.0일로 가장 길었고, 기능공, 조공, 보통인부는 각각 21.5일, 21.9일, 20.2일로 비슷한 편임.

3. 임금 및 노동시간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일당은 평균은 65,475원인데, 숙련공과 비숙련공간에 차이가 있음. 십장과 기능공은 83,897원과 72,735원인데 비해, 기능공과 보통인부는 54,476원과 48,647원에 불과함.

- 이것은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간에 차이가 없음. 관급공사는 전체 평균일당이 65,013원이고 민간공사는 64,94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음.

○ 노동시간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, 십장은 10시간 7분, 기능공은 9시간 59분, 조공은 9시간 59분, 보통인부는 9시간 49분임.

○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음.

- ‘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초과시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’(30.3%), ‘주휴를 주거나 수당을 준다’(23.8%), ‘월차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준다’(23.5%), ‘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준다’(24.9%), ‘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준다’(36.3%), ‘퇴직금을 받아 본 적이 있다’(21.4%)로 대부분 20-30대로 노동법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임.

-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설현장에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압도적으로 많은 노동자(42.2%)들이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지적하고 있어서,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.

- 휴업수당도 단지 4.3%의 노동자만이 받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옴.

○ 한편, 불법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‘노동강도가 세져 육체적인 피로가 심해진다’(44.4%)와 ‘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’(21.3%)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.

- 이런 문제를 가진 불법하도급을 막는 방법으로는 ‘면허취소 등 업체퇴출’(38.6%)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‘노조, 시민 등의 감시단 활동 강화’(28.9%)였으며, ‘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및 공사수주 제한강화’(27.8%) 순이었음.

4. 건설현장과 노동자복지

○ 건설현장에 ‘고용관리책임자’를 두게 되어 있는데, 대전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고용관리책임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33.1%에 불과하여,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모르고 있음.

- 이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24.1%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음.

- 또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3.4%에 불과함. 이것도 문제지만 실업급여대상자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몰라서 신청도 하지 않은 노동자가 52.3%나 되었음.

○ 이런 상황은 퇴직공제제도에 관해서도 비슷한 상황임.

- 퇴직공제제도를 알고 있는 노동자는 32.9%였으며, 퇴직공제수첩을 받는 노동자는 7.3%에 불과함.

○ 건설노동자의 직업훈련체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.

-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노동자가 84.2%에 이르고, 현재의 기능 습득경로는 ‘현장동료’로부터 얻은 노동자가 84.1%임. 하지만 직업재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4.0%의 노동자가 인정하고 있음.

5. 직업관련의식 및 권리의식

○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‘수입이 적어서’(33.9%)와 ‘고용불안’(36.7%)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
- 이 때문에 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되기(62.7%)를 희망하고 있음.

○ 건설현장 생활 속에서 노동자의 상담상대는 작업반장(30.0%), 현장동료(23.5%), 노동사무소(21.5%), 노조단체(19.2%)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음.

- 한편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.3%의 노동자가 인정하였지만, 66.5%의 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. 반면 노조가 가입권유를 하겠다면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비중은 66.0%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조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음.

6. 생활실태

○ 대전지역 건설노동자의 연소득총액은 십장, 기능공, 조공, 보통인부가 각각 1,566만원, 1,204만원, 902만원, 824만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. 이것은 겨울기간에 실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임.

- 반면 노동자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 수는 평균 3.5명으로 위의 소득으로는 최저생활을 하기도 힘들 것으로 판단됨.

○ 노동자의 저축과 부채 상황도, 저축은 500만원 정도인데 비해 부채는 1,500만원 정도로 대다수의 건설노동자는 부채를 지고 살아가고 있음.

- 이런 경제상황은 IMF와 비교해보면, ‘더 나빠졌다’(53.3%)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생활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